

분쟁조정사례 · 판례집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행 · 복 · 금 · 용 · 투 · 자 · 길 · 라 · 잡 · 이



# 01 / 금융투자상품 개념

## 1 금융투자상품이란?

✦ 주식, 채권, 펀드는 물론 선도·선물·옵션 등의 금융기법이 가미된 금융상품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법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 이 있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①)으로 정의됨.

쉽게 말해, ‘투자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 2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인 특성

✦ ‘원금손실이 가능’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면에 투자원금 손실은 물론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예금 또는 적금 등과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부도발생 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증권회사에 예치된 위탁자 예수금과 증권회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은 예금자보호의 대상(5,000만원 한도)이 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결과는 ‘본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원금보전을 해주겠다고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나 그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5조 :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 금융투자상품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시장의 대내외적 요인, 투자상품의 고유특성에 따라 손익내역이 계속적으로 변동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상황과 금융기관의 관리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선택시 주의사항** ■■■

- ① 투자자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투자권유를 받을 때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결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 ④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⑤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예상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⑥ 금융투자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경우에도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⑦ 금융투자상품 가입서류 등에 자필서명하면 해당 서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경우에만 서명하여야 합니다.

**3**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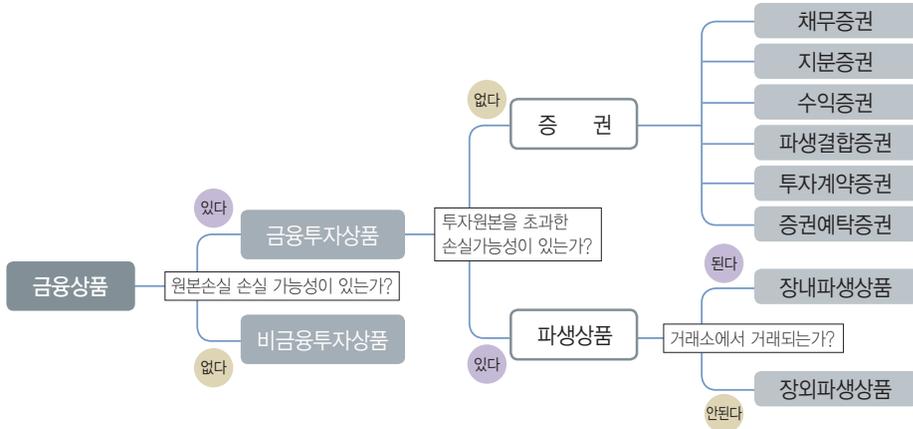
**❖**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구조, 기초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금융투자상품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 투자시 원본(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투자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별 손실발생범위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변동금리부사채(FRN), 신용연계증권(CLN) 등과 '증권'에 속하는 파생 결합 증권은 원본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100% 초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선물·옵션[KOSPI200, 달러, KTB(Korea Treasury Bond, 한국국고채) 등]과 같은 장내파생상품과 선도·스왑 등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경우에는 원본을 초과(수익률 -100%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은 수익구조와 위험특성이 통상적인 주식, 채권 등과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각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용 · 어 · 풀 · 이

#### ①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무보증 회사채의 성격을 가짐.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상환일에 지급할 금액이 특정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 특징.

가장 간단한 형태의 ELS는 기초주식인 A종목 주가가 만기일에 가서 ELS 발행일 현재 증가의 65% 이상이 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만 상환(원금보장형)하는 구조임. 최근에는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 가격 하락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원금비보장형) 및 투자기간 중 특정 시점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중도에 상환하는 구조의 상품이 보편화되고 있음.

#### ②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S는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던 ELS가 발전한 형태로,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치, 특정 회사의 신용도 등이 사전에 약정된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발행인이 약정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 ELS와 마찬가지로 지급조건이 성취 여부에 따라 투자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특성과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③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의 주가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한 증권. 상품구조가 옵션과 유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만기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러피언 콜옵션의 형태로 발행됨.

가장 간단한 형태는 콜(call) ELW 구조로,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 중에 특정 주식의 종가가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ELW 발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종가에서 권리행사가격을 뺀 금액에 사전에 약정한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만일 그 차이가 0 이하가 되면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구조임.

또한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ELW의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는 주식처럼 거래가 이뤄지는데 투자자가 권리행사기간 중에 권리를 행사하면 거래소가 결제이행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만기 시에는 증권회사가 결제 의무를 지게 됨. 따라서 ELW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특성,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옵션의 내재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개념,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도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④ 변동금리부사채(FRN, Floating Rate Note)**

채권의 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금리에 연동하는 채권. 고정금리 채권은 이자율이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고정되지만,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형태(FRN 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이자율이 달라짐. 기준금리로는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이 대표적이며,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와 채권 만기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됨. 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한 캡형 변동금리채(capped FRN), 만기가 없는 영구변동금리채(perpetual FRN), 다양한 상환조건이 부가되는 옵션부 변동금리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⑤ 신용연계채권(CLN, Credit Linked Note)**

특정 기업의 신용위험에 연계되어 이자나 원금이 결정되는 채권. 가장 간단한 형태는 회사채를 발행한 특정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면 CLN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임.

예컨대, 발행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준거자산(reference asset)으로 하여 CLN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거자산에서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발행인이 보유한 준거자산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임. 따라서 준거자산의 신용위험, 부도 시 회수가능성, 신용위험의 정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부(ETF, 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 등의 가격변동성을 모방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만들어 그 주가지수 수익률을 실현할 목표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예를 들어 기초자산을 두 개의 주가지수로 하는 ETF의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두 주가지수가 발행시 수준의 8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원금과 사전에 약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펀드를 청산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두 주가지수 중 하락률이 높은 쪽의 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원금×(1-하락률)]을 지급함. 따라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큰 폭의 원금손실이 가능할 수 있음.

2002년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나 펀드이므로 운용수수료가 부과됨. 인버스(Inverse) ETF는 해당 지수의 가격이 내려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며, 레버리지(leveraged) ETF는 해당 지수의 가격 상승폭 또는 하락폭의 배수만큼 손익이 확대되는 상품

**⑦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펀드,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하는 상품임.

**⑧ CMA(Cash Management Account)**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수익성이 좋은 단기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 어음관리구조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함. CMA의 장점은 통장식 거래, 자유로운 입출금, 안정성이 높다는 것임. 증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CMA는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함.

**※ 새롭게 출현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예시)**

재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범죄발생률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날씨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등

## 02 / 계좌개설 시 유의사항

### 1 계좌를 개설하기 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 여타 모든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본인의 상황과 의도에 맞는 적절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나의 투자목적은 무엇인가?

■ **계좌개설 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나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금융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투자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금융투자회사에서 권유·추천한 금융투자상품이 나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본인이나 금융투자회사 등의 책임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나의 투자성향은 어떠한가?

■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투자목적 외에도 나의 투자성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나의 투자성향이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보다 안정된 투자를 원하는 성향인지를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시)

- ①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을 선호, 원금보전을 원함
- ② 안정추구형 : 예금 또는 적금 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단기손실만을 감내하므로 일부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도 투자 가능함
- ③ 위험중립형 : 예금 또는 적금 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고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을 인식하면서 일정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
- ④ 적극투자형 : 높은 투자수익을 위하여 원금초과손실을 감내하므로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⑤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투자수익을 위하여 자산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므로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최근에 출시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주식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최근 거래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여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의 상품도 있으므로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소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원금손실가능성, 수익 · 손실 발생의 조건 및 한도, 환매 · 환금조건 등 권리관계와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은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판단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투자결과 역시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여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 나의 투자기간과 가용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 나의 투자가능기간과 여유자금 규모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규모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내에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을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주일 후에 지급 하여야 하는 부동산매입자금으로 거치식 펀드에 가입한 경우라면, 조기 해약에 따른 위약수수료가 발생 되어 도리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일지라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펀드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투자가 활발한 해외펀드의 경우 상품마다 다르지만 환매요청 이후 입금까지는 보통 7~8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기간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용투자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미수 또는 신용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 등 부수적인 자금부담이 발생 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가용투자금액을 확정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계좌개설은 투자의 시작이지만, 투자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투자의 첫 단추를 잘 꿰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쉬어가는 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우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은 5대 투자원칙 중 하나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① 3년 동안 증시가 문을 닫아도 행복할 것이란 자세로 투자에 임하라
- ② 시장은 투자가 잘 됐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오로지 결과만 말해준다
- ③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 뒤라. 잘못된 길이다 싶으면 빠져 나와라
- ④ 똑똑한 사람이 파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돈을 빌리는 것이다
- ⑤ 감정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마라. 주식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 2 투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법인) 등 실지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의 1차적 규율대상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입니다.
- 하지만, 타인에게서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차명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투자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재산을 인출하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차명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판례

예금명의자가 실제 자금을 출연한 제3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금 등을 입출금한 경우에도 예금명의자 및 금융기관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9. 3.19. 선고 2008다458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

- 또한,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에도 실제 계좌운영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을 계좌명의인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투자결과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명의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3 투자설명서 및 약관 내용의 확인

✚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체크하여야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좌개설 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교부받아 적어도 투자기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기재하는 문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특히 투자설명서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기재사항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사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때 판단하는 1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비밀번호 등의 관리

✚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거나(ex. 0000, 1111), 자신의 핸드폰 번호 또는 생일과 같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번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거래 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공공장소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금융정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본인계좌를 유용하여 본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 등과 같은 친밀함의 정도를 떠나 본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도장의 경우 위조가 쉬운 목도장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권카드, CMA카드, 인감 등의 분실 시에는 이를 이용한 출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분실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또는 인감을 분실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이 이루어지면 각 금융기관으로 전파되어 등록된 사람(신분노출자)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금융기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절차 등을 거치게 되므로 이후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증권카드 등을 맡기는 행위는 분쟁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를 삼가셔야 합니다.

**Q.** 지인이 증권 위탁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비밀번호 및 거래인감 등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계좌번호, 비밀번호, 거래인감과 증권카드 등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보관하는 경우 횡령, 배임 등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인에게 알리거나 맡기지 말고 스스로 관리 하고, 투자금도 본인이 직접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5 투자금의 입금

❖ 투자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지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입금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영업지점 이외의 장소에서 직원에게 투자금을 건네주고 입금을 요청하거나,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와의 정상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03 / 계좌관리요령

#### 1 주기적인 거래상황 체크, “내 재산은 내 손으로”

✦ 내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거래 상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익실현기준 또는 손절기준을 미리 계획해 놓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는 다수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주식, 채권등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금의 평가가치도 수시로 변동합니다.

또한 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환매를 요청하는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에 환매가격이 책정되고 그 이후에 환매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펀드투자시에는 환매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환매 시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과 펀드평가가치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주식형펀드 환매 시 기준가 및 결제일

유형	환매신청일(T)	기준일	결제일
국내 펀드	오후3시 이전 환매신청 시	T+1일	T+3일
	오후3시 경과후 환매신청 시	T+2일	T+3일
해외 펀드	브릭스		T+2일
	중국, 일본, 호주	오후3시 이전 환매신청 시	T+1일
		오후3시 경과후 환매신청 시	T+2일
	인도		T+2일
	유럽		T+2일
			펀드별로 결제일/출금일이 상이하므로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동일국가 대상 펀드라 하더라도 펀드별로 환헤지, 거래소, 투자대상자산 등이 상이하므로 결제일/출금일이 상이할 수 있음

✦ 거래상황 체크를 위해 월간 거래내역이나 자산운용보고서(분기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신의 투자내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다른 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 관련 상담 시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권회사,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익결과에 대하여 직원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추천사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 이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상담창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상담창구에서는 상품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투자를 결정한 고객에게 여러 서류에 서명할 것만을 재촉하는 관행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 직원은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여 충실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 직원의 재촉에 못이겨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 기재해 준 서류는 향후 분쟁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할 때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손실부담 약정을 맺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의 매매, 그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법 55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금융투자회사와 일정부분의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맺는 것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경우로서

-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 포함)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③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 3 개인정보(주소지 등) 변경 시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등이 고객에게 통지하는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 미결제 약정 현황 및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은 고객이 회사에 알려준 연락처나 주소로 통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거래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는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보유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회사가 담보부족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추가담보 납부나 추가입금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만일 고객이 연락처 변경사실을 증권회사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아, 해당 회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간 매매 등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 월별로 발송되는 월간 매매내역의 경우 주소지 변경 사실이 사전에 통보되지 아니하면 고객이 거래내역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간 매매내역은 보통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만약 반송되지 아니한다면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내역 확인 및 수시 계좌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월 우편으로 주식거래내역이 집으로 송부되는데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잘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되나요?

**A.**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확히 처리 되었는지 또는 고객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금융사고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장치입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상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즉시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04 / 계좌운용(투자) 요령

### 1 주식 등 주문제출 시 유의사항

❖ 직원을 통해 주문을 내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종목명,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전화를 통해 주문을 내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직원의 개인 핸드폰보다는 지점 전화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Q.** 증권회사 직원과 투자 및 매매주문과 관련하여 주로 직원의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 증권회사 영업점의 전화는 모두 녹취가 되지만 증권회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는 녹취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권유 및 매매주문이 이루어졌다면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문 이후에는 실제 주문이행상황 및 매매체결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본인의 주문과 다른 매매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잘못된 주문을 즉시 해소하여 바로 잡고 손해배상책임은 물을지, 아니면 잘못된 주문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잘못된 주문을 이행하였으나 당시 오히려 수익이 발생(예를 들어, A주식 100주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매수하였는데 주가는 상승한 경우)되어 고객이 이러한 주문을 수용한 경우에는 이후 매도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고객은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I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 지점에서 주문전표를 통해 주문을 낼 때에는, 주문수량 및 가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본인의 서명만을 기재한 채 주문전표를 직원에게 전달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주문이 제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주문전표의 작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주문전표를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주문전표를 건네받아 직접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나요?

A.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아니나,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개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관리·감독을 받으며, 종전 전담투자상담사 제도가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만 가능하며, 투자자로부터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권유대행인은 ①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②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③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 재산수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Q. 특정 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하면서 펀드투자권유를 하는데 동 대행인이 그 증권회사 소속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발급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증표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전문인력 조회”란에서도 소속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증권회사 객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증권전문가라며 운용을 잘 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지요?

A.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투자를 일임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증권회사의 피용자(직원)가 아니므로 손해 발생시 증권회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2 HTS 사용 시 유의사항

- ❖ 평소에 투자자 본인의 ID,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가급적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증권회사로부터 휴대전화 SMS를 통하여 본인계좌에서의 변동사항을 제공받는 등 주문 체결 및 인출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고객의 HTS 조작오류로 발생한 손해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HTS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사용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익힌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HTS 사용 중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HTS를 종료하고 재부팅 시 다시 로그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PC방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HTS에 접속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PC에 복사해 두는 행위는 금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삼가해야 합니다.
- ❖ 해킹으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현금이 임의로 인출된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증권회사(콜센터, 영업점)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추가인출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HTS거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전산장애 시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06년 이후 주식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전산장애 발생사실, 동 장애시간 중 주문의사(매매하고자 한 종목, 가격, 시기 등)등 장애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즉시 증권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매의사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남기고, 장애당시 PC화면 캡처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산장애는 갑자기 발생하므로 평소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각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살펴보고, 비상주문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전산장애 시 대처(예시)

- ① 금융투자회사 지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매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콜센터 전화번호는 전산장애 시 많은 전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점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지점전화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거래지점의 연락처를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② 본인의 HTS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면캡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이후 전산장애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자료의 정도, 거래의 체결가능성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고객이 계속적으로 매매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산장애 이후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장상황이 형성되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이후 금융투자회사 민원처리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차원의 대책에 대해 1차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금융투자회사의 귀책사실이 명백한 전산장애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우리 협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①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②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 ③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 앞으로 통보 및 변경 조치하십시오.
- ④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경우 PC지정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⑤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 ⑥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⑦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 ⑧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 ⑨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십시오.
- ⑩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 사고에 대비하십시오.



### 3 모바일폰 사용 시 유의사항

- ✦ 모바일폰은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융거래도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우대 등 모바일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모바일폰은 이름처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폰의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 공공장소에서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 사용시 해킹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니 특별히 주의 바랍니다.

#### 모바일폰 금융거래 10계명

- 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 ② 모바일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 ③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④ 모바일폰 분실·도난시 모바일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 ⑤ 모바일폰 교체·수리 전 중요 정보 삭제하기
- ⑥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 ⑦ 모바일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 ⑧ 모바일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 ⑨ 모바일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 ⑩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 사용시 주의하기



#### 4 공시정보 체크요령

✦ 증권투자와 관련한 가장 일차적인 투자정보는 증권시장 공시 관련규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공시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공시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상장법인 등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공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관련 사항 또는 CB(전환사채) 투자 시 전환권 행사시점,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은 통상의 경우에 증권회사 지점을 통해 안내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안내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전에 증권회사 지점 등을 통해 이러한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Q. 상장폐지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투자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종목선정 당시 및 투자 이후에 증권회사 직원 등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 공시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작전 등 시세조종이 이뤄진다면 매수추천을 한 직원을 믿고 매수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여부는?**

**A.** 시세조종은 법상 금지된 불공정한 거래행위이므로 투자자가 작전 등 시세조종 종목임을 알고서도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5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요령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식, 펀드, ELS, 랩어카운트, 선물·옵션 등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투자하는 “묻지마식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 ■ ■ 자신에게 맞는 금융투자상품 고르기 5단계 ■ ■ ■

- 1 단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기간 등 본인의 투자정보를 금융투자회사에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2 단계 : 본인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 3 단계 :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아야 합니다.
- 4 단계 : 투자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구조, 위험, 수수료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 5 단계 : 원본 초과 손실이 가능한 파생상품은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성향을 파악한 후 해당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스스로 어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지를 미리 정하고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그 상품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합니다’라고 조언한다면 한 번 짚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와 본인의 투자 역량을 점검하여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투자의 지름길입니다.

### 일반적인 상품의 위험도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초고위험 (선물옵션, 신용거래 등)
- 고위험 (주식)
- 중위험 (BBB+~BBB- 회사채, 원금부분보장형 파생결합상품 등)
- 저위험 (채권형 펀드, A-이상 회사채, 금융채 등)
- 초저위험 (MMF, 국고채, RP 등)



## 1) 펀드 투자요령

**Q. 펀드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펀드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가입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기간, 투자유형, 투자성향 등 투자목적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② 펀드가입시기 결정 등과 관련하여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③ 운용회사나 펀드매니저에 따라 운용성과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회사의 과거 실적 및 운용전략, 펀드매니저의 운용성향 등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판매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판매상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 ■ 펀드 가입전 정보수집

#### 가. 펀드 상품의 특성 이해

- 원금손실 발생 가능 :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제한없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펀드상품의 장점 : 일정 수준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주는 은행권의 예·적금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 하지만, 운용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나. 본인의 투자성향, 목표 등의 확인

- 나의 투자성향과 목표는? :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 목표 등을 검토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성향이란? :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 수준을 말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투자 목표란? : 펀드투자의 수익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노후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단순 재테크 등 본인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 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확인

- 보수와 수수료의 이해 : 펀드의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등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펀드 가입자의 투자금액으로 부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 보수와 수수료 확인의 중요성 : 보수와 수수료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펀드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선택시 보수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와 수수료 수준을 알아보려면? :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 서비스 페이지(dis.kofia.or.kr)의 펀드공시에서 펀드별 보수와 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펀드 관련 정보 확인

- 운용사와 매니저의 과거실적 확인 : 펀드를 선택할 때에는 보수와 수수료 외에도 해당 펀드의 과거수익률과 펀드매니저의 과거 실적은 어떠한지, 운용회사는 안정적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운용사와 매니저의 과거실적을 확인하려면? : 해당 정보들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페이지 (dis.kofia.or.kr)의 펀드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

### 가. 펀드 판매회사 방문

펀드가입은 각 증권회사 및 은행, 보험회사의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투자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 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

판매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펀드가입 메뉴에서 안내하는 대로 실행하면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펀드 가입 절차

### 가. 본인정보 판매처에 제공

- 펀드 판매회사 직원과 투자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도 1부를 제공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 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자 유형구분

- 판매업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투자자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유형분류 : 현행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투자자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등급 이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현재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위험이 따르는 상품까지 투자해도 괜찮은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더 높은 등급의 투자자일수록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판매회사에 대해 투자자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하고자 투자자유형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 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유형을 위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기간까지도 고려하여 투자자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투자권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 법규정보 시스템 → 모범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적합한 펀드 선정**

- **투자권유 청취 및 상품선정** : 투자자 유형에 대한 분류결과에 기초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투자권유를 받고 적합한 상품을 선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투자권유를 원치 않거나 본인 투자유형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펀드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자 확인서에 서명 후 투자 가능합니다.

**라. 펀드에 대한 설명 청취**

- **펀드에 대한 설명 청취** : 투자권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듣습니다.

**마. 투자자 의사확인 후 가입절차**

- 판매회사 직원이 최종적으로 펀드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펀드 가입절차** : 직원의 설명을 듣고 펀드가입을 원할 경우 투자금 납부, 투자설명서 수령(교부확인서 제출), 펀드통장 수령 등 펀드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 **투자방식 결정** : 적립식(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예치)으로 투자할 것인지, 거치식(한번에 투자금액 전체를 예치)으로 투자할 것인지도 잘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투자금을 납부하게 되며, 투자설명서는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식/거치식 펀드의 특징**

적립식 펀드는 일정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므로 시장의 등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거치식은 펀드시장 상승기에 맞추어 투자했을 경우 적립식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 펀드는 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분산효과가 점점 줄어들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펀드의 보유 및 환매**

**가. 펀드 판매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 **사후관리 서비스의 종류?** : 펀드의 판매회사는 펀드관련 각종 보고서 제공, 잔고통보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펀드판매사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확인** :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활용하여 내가 가입한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 기간 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 회전율, 향후 운용계획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서비스 활용** : 판매사는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는 투자자의 펀드잔고, 개별 수익률 정보 등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제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산보관·관리보고서 확인** :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활용하여 펀드의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며,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 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 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 나. 펀드 공시정보 확인

- **공시정보를 확인하려면?** : 펀드매니저 변경, 환매연기, 부실자산 발생 등 펀드에 중요사항 발생시 자산운용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페이지 (dis.kofia.or.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지점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펀드 간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 펀드 비교공시정보를 통해 내가 가입한 펀드가 동일유형의 다른 펀드와 비교하여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 서비스 페이지에서 펀드 간 운용실적(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다. 펀드 환매시점 결정 및 환매절차

- **펀드 환매시점 결정** : 본인의 투자목표 달성을 위해 펀드 선택 및 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펀드의 적절한 환매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폐쇄형펀드(미리 정해진 만기시점까지는 투자자가 임의로 환매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펀드)가 아니라면, 본인의 판단하에 환매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회사에서 보내주는 각종 보고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내 펀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향후 경제 전망 정보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환매시점을 결정합니다.
- **펀드 환매절차** : 환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 기간중에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들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는 펀드 가입시 제공되며,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페이지 (dis.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매는 직접 지점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펀드도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나요?

A. 펀드는 예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므로 펀드에 가입된 투자자들의 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펀드재산은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신탁업자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내의 집합투자재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펀드기준가격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펀드 판매(또는 환매) 요청 시 펀드매수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 요청일 이후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금 납입일 또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채권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 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란?**

**A.** 일반적으로 펀드는 외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역외펀드(외국펀드)와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역내펀드(국내펀드)로 구분됩니다.

## 2) ELS(주가연계증권) 및 DLS(파생결합증권) 투자요령

투자시 ①수익률 ②기초자산과 손익구조 ③투자기간 ④발행증권 회사의 신용도를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ELS 및 DLS, 이권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합시다!

- 수익률** : ELS 및 DLS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ELS 및 DLS등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는 상품별로 제시한 특정한 조건의 성취 가능성에 달려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LS 및 DLS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실현할 확률은 생각보다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설명서가 제공하는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수익률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초자산과 손익구조** : ELS 및 DLS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초자산별로 가격흐름이 모두 다르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을 잘 살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투자기간** : 만기가 최대 3년(사전 협의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습니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할 자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발행증권사의 신용** : ELS 및 DLS는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드는 상품이기에 이를 만든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전액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신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금의 용도** :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ELS 및 DLS는 투자금의 용도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LS 및 DLS는 최대 3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길게 투자할 수 없거나,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라면 원금손실이 나도 경제적 타격이 적겠지만 대출금 상황, 주택구입대금, 물품구매대금 지급용이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 **투자시점** : 또한 투자 시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높을 경우 ELS 및 DLS는 향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가격대비 상승이 예상된다면 투자하면 되지만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를 보류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많은 분들이 투자했으나 이후 금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유사상품의 비교** : 마지막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상품을 고를 때에는 상품별로 비교해 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LS 및 DLS는 매번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 모집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그때그때 투자할 상품을 찾아 비교 해 봐야 합니다.

ELS 및 DLS에 대한 상품비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www.seibro.or.kr](http://www.seibro.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ELS에 청약하려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장시간 설명하기에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설명을 잘 받았다고 자필서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설명의무 확인서류상의 투자자의 자필서명은 분쟁발생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원의 상품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때에 자필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권회사 직원이 ELS 청약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만기시 기대수익률, 기초자산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는데 더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있을까요?

**A.** ELS가 중도환매시 높은 중도환매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실상 중도 환매가 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기가 있어 만기에 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펀드와 다릅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조건, 만기,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요령

- ELW는 파생상품인 옵션거래와 유사하나, 주식계좌로 거래가 가능하고 증거금이 별도로 없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ELW의 가격은 기초자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기초자산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이 일어 납니다. 이 때문에 기초자산이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반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원금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또한 ELW는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ELW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프리미엄이 만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프리미엄이란 말 그대로 웃돈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 가능성,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 ELW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권리증서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내가격\*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외가격인 경우 휴지가 되기에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내가격이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콜 옵션의 매입·매도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풋 옵션의 매입·매도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요령

#### 주가지수 선물 대비 ETF의 장점

- 주가지수 선물은 매일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이 수행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마진콜이 발생하는 반면, ETF는 주식과 같이 별도의 정산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가지수 선물은 정해진 만기가 있는 반면, ETF는 만기가 없다는 점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 거래단위도 선물과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수 ETF는 지수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도 매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지수 ETF의 경우 1주의 가격은 약 2만 5000 원이고 최소 10주 단위로 거래되므로 거래단위가 KOSPI200지수 선물(약 1억 2500만 원)의 500분의 1에 불과해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펀드와 비교시 보수가 낮은 편이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단점 또한 있으니 투자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선, ETF 투자시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ETF의 경우 손쉽게 해외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해당국가 통화에 대한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5) 기타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의사항

**Q. 증권회사에서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면 회사채, CP(기업어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데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A.** 회사채, CP, ABCP 등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나,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발행회사 부도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용등급,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회사채, CP, ABCP 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신용등급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이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주식매매거래 경험만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수익이 난다면 선물옵션, ELW, FX마진거래 등을 권유하는데 해도 될까요?**

**A.** 선물옵션, ELW,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등의 거래는 주식거래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단기에 투자원금 이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Q.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A.**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국내파생상품 거래보다도 더 레버리지가 높고 시세변동성이 커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인의 투자목적, 위험감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Q.**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 당일중에도 반대청산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있는지요?

**A.**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해 거래 도중에도 증거금 부족이 발생하면 다음 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포지션 청산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이전에 FX마진거래 또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반대매매 청산 지침내역(위험비율 등)을 확인하고 거래 중에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수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포지션 변경이 필요합니다.

### FX마진거래로 높은 수익을 준다는 불법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생상품투자중개회사(금융투자회사)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입니다.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사이트, 투자방 운영 등을 통한 권유·알선 행위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이들은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방법을 사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계좌관리를 일임한 경우

### ■ 일임이란?

✚ 현행 자본시장법은 종전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 투자자가 여행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약관 등에 따라 미리 매도 권한만을 일임 받는 경우라든지, 단 하루 동안의 매매에 한하여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한정해 놓고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 판단만을 일임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상으로 ‘투자일임’이란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으로 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매매와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고객의 측면에서는 자신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본인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그 대신 투자에 따른 결과를 나에게 귀속시키는데 동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자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민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민법 §680조)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임에 따라 수임자는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만일 수임자가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투자일임계약서

✚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일임 시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일임계약서를작성할 때 어떠한사항에 대해 직원에게 일임을 하는지, 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거래내역의 주기적인 체크

고객과 금융투자회사 간에 일임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은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투자판단과 매매거래의 결과가 나의 재산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믿을수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투자일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거래내역 정도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직원이 투자과정에서 투자일임계약서 기재사항이나 당초의 본인 일임취지에 반하는 투자를 실행하여 고객이 부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고객 또한 자기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아 손실확대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액 산정과정에서 과실상계되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이의제기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민사 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산정 시 고객의 인지시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이는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추인 또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아예 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통한 부적절한 매매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금융투자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 시 매매를 통해 손해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 재산은 각 고객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에 따르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Q.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는 무엇입니까?**

**A.**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등
- ⑤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98조)

**Q.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증권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한 법인이 발생한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⑥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⑦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⑨ 투자일임재산 예탁 금융기관을 지정·변경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예탁·인출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시행령 제99조)

# 05 분쟁발생 시 대응방법

## 1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 포함)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731조(화해의 의의)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간의 분쟁을 정리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분쟁해결은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합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규정된 손실보전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

- i)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ii)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iii)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iv)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음
-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포함)
  - 퇴직일시금신탁



- 상기와 같은 원금보전(약정)행위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일관되게 무효로 판시하고 있어 동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나 그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2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분쟁해결

-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서는 타 금융권역에서 볼 수 없는 분쟁조정제도를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는 우리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은 금융투자회사와의 분쟁발생시 자율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어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경우 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및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끼리 분쟁을 직접 해결하려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3 소송 등을 통한 분쟁해결

-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이용하거나, 소송 중 재판장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민사조정법 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 민사분쟁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簡易,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은 항소심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I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 이러한 소송 등의 절차는 국가 사법기구를 통해 분쟁사건의 확정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자율적인 분쟁조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를 통한 소송 수임 시 고가의 수임비용, 인지대 등 2차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증권회사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단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매매를 시작했고 그 결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증권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Q.** 증권회사 직원이 고수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랩어카운트 상품을 권유하여 가입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랩어카운트는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일임하되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래 형태로, 투자권유 또는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만으로는 증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Q.**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거나 또는 고객의 의사와는 다르게 주문실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상매매 사실을 발견한 이후 특별한 이익제기 없이 시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등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발견 즉시 증권회사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적극적,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책임

### ▣ 정의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 포함)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통상 당해 임·직원을 상대로만 직접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상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잘못으로 분쟁이 발생한 투자자는 입증과 채권확보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책임 인정요건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
- ④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 ▣ 사무집행 관련성

이 중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무집행 관련성(상기 ②)’입니다.

결국,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사용인을 대신하여 사무집행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회적 활동영역을 확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외형이론\*을 통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고의·중과실)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외형이론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이론

행 · 복 · 금 · 용 · 투 · 자 · 길 · 라 · 잡 · 이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분쟁조정사례 · 판례집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행 · 복 · 금 · 용 · 투 · 자 · 길 · 라 · 잡 · 이



## 01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개요

##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란?

✚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또는 겸영금융투자회사(은행, 보험 등)를 통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한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투자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과 같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업무형태는 민법상 위임계약 및 상법상 위탁매매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임인 또는 위탁매매업자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로 인한 민사 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어떠한 거래단계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주요한 분쟁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매매

고객이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였고 그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매매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예탁자산으로 마음대로 매매한 경우에는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해당 직원에게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일임매매

투자일임업자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초의 일임계약 취지를 위반하여 수수료 수입목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 등 고객총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p><b>부당권유</b></p>	<p>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 또는 은행, 보험 등의 경영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b>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b></p>	<p>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부당권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실보전약정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p>
<p><b>주문 관련</b></p>	<p>고객이 낸 주문을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주문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매매주문을 제출받아 처리한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b>기타 분쟁</b></p>	<p>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기타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인한 분쟁, 증권회사 직원의 기망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례 등이 있습니다.</p>

※ 상기의 분류기준은 유사한 형태의 분쟁을 임의로 구분한 것임

### 3 최근의 분쟁사건 추이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예방교육 및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고전적인 분쟁형태인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의 경우 발생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 다만, 펀드, ELS, DLS, ELW, ETF 등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및 복잡화 되면서, 상품 특성에 대한 고객의 이해부족 및 직원의 불완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부당권유 관련 분쟁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 02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주요 판례

### 1. 임의매매

#### 1 임의매매란?

✦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또는 겸영 금융투자회사(은행, 보험사 등)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개별적인 또는 포괄적인 위탁을 받지 않고 고객의 예탁자산으로 매매거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고객의 위임의사에 대한 판단

실제 발생하는 분쟁사례 중 상당수가 고객이 임의매매를 주장하는 경우이나, 결과적으로 임의매매가 인정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시의 고객 의사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계약체결 당시의 권유방법, 투자목적 내지 동기, 투자자의 거래경험, 거래원장에 나타난 거래내역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고객의 위임(일임)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위임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거나, 거래인감을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의 직원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직원에게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임의매매 관련 기본 법리

### ❖ 투자일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임의매매는 결국 투자일임약정이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투자일임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매매를 금지(\$70)하고 만일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일임계약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자일임계약서 작성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에 부여된 업무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일임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일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구비하지 않고 투자일임을 받은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투자자의 사후 추인 여부

임의매매는 고객과의 투자일임약정이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마음대로 매매한 것을 의미하지만, 사후에라도 고객이 매매결과에 대해 수용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의매매 행위는 별도로 민사 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고객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임의매매 추인에 따른 효과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객은 임의매매의 수용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고객의 추인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이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묵시적 추인 여부는,

- i)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 ii)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여부
- iii)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
- iv)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매매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이러한 임의매매에 대한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의매매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계좌상황 등을 점검하고 즉시 금융투자회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한 시점은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될 수도 있어, 인지시점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회사에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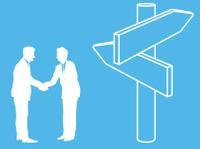
####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의 차이점

대다수의 투자자는 임의매매와 일임매매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글자모양이 유사한 '임의매매'와 '일임매매'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두 가지 형태의 매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주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임의매매는 매매거래에 대한 위임이 없었음에도 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인 반면, 일임매매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직원이 매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의매매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투자자로부터 받은 매매권한을 가지고 매매한 일임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고 직원의 충실의무위반 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조정 상담사례 중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과거에 매매거래 전반에 대해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후보고를 누락한 것을 두고 임의매매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매매권한이 위임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매매 건에 대해 임의매매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임의매매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불법행위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매매의 경우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임의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

=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의 계좌잔고 - 임의매매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제기를 한 시점에서의 계좌잔고

다만,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객이 손실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과실상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고객의 장기간 거래내역 확인 소홀 또는 계좌번호 · 비밀번호 관리 소홀, 임의매매 인지(가능)시점 이후의 대처 미흡 등

### ❖ 임의매매에 따른 처벌여부

종전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서도 임의매매에 따른 처벌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매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444)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인 간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 또는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처벌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임의매매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임의매매 사례 1

[대판 2002. 4. 10 선고 2002다2232]

비록,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일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행한 신용거래의 경우 임의매매에 해당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증권회사 직원인 B에게 투자위임을 하기로 하였고, 직원B는 A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직원C에게 교부하여 '97. 6. 28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음
- 그러던 중에 '97. 9. 22. B는 C에게 전화로 A명의로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여 C는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고객A가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고객A도 모르게 복사하여 계좌개설서류를 완성하였음
- A명의로 신용거래계좌가 만들어지자 B는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C에게 지시하였고, '97. 9. 30. 에서는 A는 신용거래사실을 인지하고 본인 계좌의 거래중지를 요구하였음
- 이후 A는 '97. 10. 4. 전화를 걸어 현금주식 거래만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97. 10. 20. 에는 자신의 주문없이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후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결국, 증권회사는 '98. 2. 24.~ 27.까지 신용용자원리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신용매수한 주식 및 대응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신용용자금 상황에 충당하였음



## 판·단·내·용

- 고객인 A가 신용거래에 관하여 증권회사 직원인 B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회사 직원C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B의 지시로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신용매수를 한 행위는 임의매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증권회사는 A가 신용거래 사실을 알고도 '97. 10. 2. 지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신용매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만을 하였고, 이후 현금에 의한 주식거래 재개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고객A가 임의매매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의 신용거래를 알게 된 이후에 신용매수된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금한 현금의 경우에도 신용매수한 주식과는 무관한 자신의 예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신용거래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증권회사는 임의의 신용주식매수와 신용용자금 상황을 위해 이루어진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나, 고객A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직원B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장사용을 허용한 점, 신용거래 사실 이후 안이한 대처로 손실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함 (총 60%에 대해서만 증권회사 책임 인정)



## 임의매매 사례 2

[대판 2007. 6. 15 선고 2007다25049]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사실을 알고도 즉시 이익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계속 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2000. 8. 14. 피고 증권회사 지점에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한 이후 2억 3,540여만원을 예탁하고 관련 직원인 B에게 계좌관리를 맡김
- 이후, A명의로의 계좌에서는 여러 차례의 주식거래가 발생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A는 이러한 주식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임의매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판·단·내·용

- 고객A는 자신의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소신에 따라 좋은 종목을 골라 주식시장 상황에 맞춰 매매할 수 있도록 B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음
-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매수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전 A와 상의를 하였고 매수후에는 매수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으나 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주식은 매도한 것을 A가 알고도 즉시 이익을 제기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매도 입금된 현금을 이용해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음
- ◆주식의 경우, A가 B에게 2001. 2. 19. 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주가가 8,330원 정도 될 때, 주가가 8,800원쯤 될 때, 나중에는 주가가 9,000원을 도저히 뚫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들 때 주식을 팔라는 식으로 수차례 지시한 적은 있으나 무조건 즉시 매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음
- A는 각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그 거래로 취득한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B로 하여금 즉시 매도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음
- 결국, 이러한 거래는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근거하여 주식매도 한 후 사후에 A로부터 묵시적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의매매가 아님

임의매매 사례 3

[대판 2002. 7. 23 선고 2002다41503]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사실을 알고도 즉시 임의매매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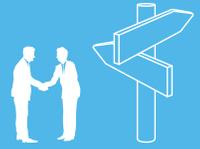
사·건·개·요

- '99. 12. 23. 증권회사 직원인 B는 고객 A계좌를 통해 ☆종목을 임의매수하였고, 매수당일 저녁 A와의 저녁식사 중 임의매매 및 추가하락 사실을 고지하였음
- 또한, 임의매수일 다음날인 '99. 12. 24. 에는 전화 통화 중 A가 '얘길 들어보면 그럼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뭐 재료만 좋다면 장이 불안해도 그건 가지', '관망을 해 보겠다 이거야?' 등으로 B에게 말한 사실이 있음



판·단·내·용

- 비록, A가 임의매수 다음날 전화통화에서 B의 임의매수를 관망하는 듯 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말미('99. 12. 27.)를 구하면서 주식전망을 낙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직원 B가 한 변명에 A가 수긍할 점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 지나지 않고,
- 오히려 '99. 12. 27.에는 B가 임의매매에 관하여 함구하고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기별도 하지 않자 '00.1.4. 전화통화시 B의 임의매수를 강력히 질책하였고,
- '00. 1. 11. 전화통화에서는 기한날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음
- 더군다나, 고객A는 임의매수 이후 하등의 처분행위를 한 적도 없음
- 결국, 고객A가 직원의 부탁에 따라 관망할 수 있는 다소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거나 추가상승의 개연성이 수긍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임의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한편, 고객A가 과거 몇 차례 임의매매를 추인하였던 적이 있고, ☆종목 임의매수에 따른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원금의 잠식에 이르지 않았던 점, 임의매수 이후 즉시 예탁금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여 임의매매에 대한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임의매매 사례 4

[대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고객과 직원이 약정한 매매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매매거래를 계속한 경우 임의매매를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02년도에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 자로서, '03. 4월경 “월 3% 정도의 수익이 충분 가능하다”, “10% 이상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의 거래에 관하여 A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 직원인 B에게 10억원을 위탁하여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였음
- 이후,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03. 6. 11.과 6. 12.에 걸쳐 행사가격 82.5인 7월물 콜옵션 300계약과 행사가격 85.0인 7월물 풋옵션 700계약을 매도하는 등 옵션 매도약정을 다량 보유한 이후 '03 .6. 12. 기준으로 잔고평가액이 7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게 되었음
- 당시 A는 HTS를 통해 B의 거래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으나, 거래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잔고와 각 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시 예수금 잔고가 10억원을 넘기고 있는 것만으로 투자성고가 좋은 것으로 오인하였음
- 한편, A는 '03. 7.2.에는 지수가 하락될 것으로 판단하여 행사가격 85.0인 7월물 풋옵션 5,000계약을 0.5포인트 아래서 현재가로 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풋옵션 가격이 일시 상승하여 B는 0.5포인트 이상으로 되자 원고에게 상의를 하지 않은 채 0.51~0.54포인트에서 5,000계약을 매수하였고, A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 판·단·내·용

- 본 건의 경우 고객A는 직원B에게 포괄적 임의매매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다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원금을 모두 날린 경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선물·옵션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 3%정도의 수익약정만으로는 A의 기존 투자성향에 비하여 과도한 위험성 있는 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A가 조회한 선물·옵션거래의 실시간 계좌평가화면을 통해 금일 약정함, 미실현손익함, 수수료함, 당일 거래종목의 종목별 매입가 및 청산/평가금, 실현/평가손익액 등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만으로 피고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하지만, '03. 6. 2. 현재 잔고평가총액이 8억 9천 8백여만원이 되어 최초로 1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비록 위 잔고평가총액이 전일증가를 기준으로 한 미실현손익으로서 옵션가격 등락에 따라 실제 평가총액은 장중에도 수시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날 이후 잔고평가총액이 10% 손실을 입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B는 당초 약속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고 A의 의사를 물어 거래를 재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임의매매에 해당함
- 또한, '03. 7. 2. A가 B에게 행사가격 85.0인 7월물 풋옵션 계약을 매수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B는 원고가 설정한 매수가액 보다 고가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다만, 10% 손실 초과 시 거래중단과 관련하여 A는 옵션거래의 가격변동성과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증권전산망의 화면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잘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B가 계속 거래하도록 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A의 과실을 30%로 산정하였음 (손해금액 중 70%에 대해 증권회사 책임 인정)



### 임의매매 사례 5

[대구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4487]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포괄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특정종목에 대한 매수금지 지시에 불응하여 동 종목을 매수한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00. 12. 5. 증권회사 직원 B에게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매매결과를 주1회 보고받는 형태로 거래하였음
- 그러던 도중 직원 B는 '02. 5. 9.~5. 24. ○○카드 주식 9,000주 가량을 매수하였는데 '02. 5. 25. 직원B가 ○○카드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하자 A는 이를 질책하면서 앞으로 동 종목을 매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직원 B는 이를 어기고 동 종목을 매수하였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음



#### 판·단·내·용

- 고객 A는 매주 주말마다 주식의 거래사실을 보고받아 임의매매를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동 종목 매도를 지시하거나, 그 매수행위가 자신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며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원 B에게 계좌운용을 일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A는 직원 B에게 계좌의 운용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A가 '02.5.25. 직원 B에게 ○○카드 주식을 매수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지시함으로써 포괄적 대리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식을 매수하였고, 또한 주말 보고 시에도 매수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의매매에 해당함
- ○○카드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금액은 4천만원 {○○카드 주식 매입금액(약 1억 3천만원) - 2002. 11. 9. ○○카드 주식의 시가(약 9천만원)}과 기타 제비용(약 3백만원)을 합한 4천 3백만원임
- 당시, 전반적인 주가하락 추세였으므로 ○○카드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주말보고 시 ○○카드 주식의 임의매수 사실 및 이로 인한 ○○카드주식 증가량의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우편통보를 받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A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직원 B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임의매매 사례 6

[서울동부지법 2009. 8. 20 선고 2009가합2604]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 간의 매매위탁경위, 투자자의 나이·직업·투자경험, 잔고현황 발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07. 11월 경 증권회사 직원 B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13, 역삼동지점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얼마 후 중앙청지점으로 동 계좌를 다시 이전함
- A는 동 계좌에 최초 시가 합계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하였고, '08. 2. 4까지 현금 약 1억원 입금함
- 직원 B는 동 계좌를 통해 '07. 12. 20~ '08. 8. 25 중 총 252회의 주식거래를 하였고, 동 계좌를 통해 매매를 종료한 '08. 8. 25 현재 나노XX 350주와 단성XXXX 33,276주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시가 합계는 약 4천 4백만원이었음
- 그런데 '08. 8. 20. 직원 B는 A에게 약 9천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약 1억원을 주식매매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액면금 약 1억원에 지급기일 '08. 8. 29.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약 9천만원에 지급기일 '08. 9. 16.인 약속어음을 A에게 교부하고 공증까지 해줌
- 이에 A는 직원 B가 거래종목, 거래량 등에 관하여 사전, 사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함



### 판·단·내·용

- 임의매매에 대한 판단은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간의 매매위탁경위, 투자자의 나이·직업·투자경험, 잔고현황 발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 A는 지인의 적극적인 소개로 ▽▽증권 직원 B를 주문관리자로 지정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도 4~5회 B를 직접 만나 동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현황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08.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직원 B와 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음
- A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동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이전인 '07. 6.경부터 ○○증권 및 △△증권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합계 1억 4천만원 정도의 주식매매를 하였고, 이때 약 3천 5백만원 정도의 손실 사실이 있음
- 특히, A는 동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직원 B에게 거래를 요청한 적은 거의 없었던 사실 및 상기사실 등을 고려할 때,
- 직원 B는 A로부터 주식의 종목을 포함하여 수량, 가격, 매매시기, 매매구분과 방법 등의 결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의매매로 보기 어려움



### 관·련·판·례

- 포괄적 일임행위가 종전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96. 8. 23. 94다38199)

## 2. 일임매매

### 1 일임매매란?

❖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투자일임)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전 증권거래법의 경우, 위탁매매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투자상품 운용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일임매매와 같은 형태의 투자일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2 일임매매 관련 기본 법리

#### ❖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투자일임계약은 민법 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임자(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행위로 발생한 손익결과가 위임자(계좌주)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국,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계약 상 수반되는 각종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여타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고객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전망에 대한 잘못된 판단 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능력부족만을 이유로 투자일임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일임매매

하지만, 투자일임이 있었던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매매한 경우나, 당초의 투자일임계약서의 구체적인 일임취지를 일탈 또는 초과하여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과다일임매매'입니다.

### ❖ 과다(과당)일임매매의 판단기준

'과다일임매매'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이용하여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실행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과다매매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다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 고객 계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지배 여부
-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빈번한 주식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소유자로서 직원에게 단기매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매매지표상으로 과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과다일임매매의 경우에도 임의매매와 마찬가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불법행위인 과다일임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다일임매매가 행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과다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

- = 과다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잔고
- 과다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
- 과다매매가 아니었다라도 발생하였을 제비용이나 예약금 손실 등\*

\* 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②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다매매와 무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손해

이와 같은 과다일임매매의 경우에는 민법 상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맡겨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의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임 이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분쟁사례보다 상대적으로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직원의 투자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소홀(거래내역 확인소홀 등) 또는 위임취지에 반한 투자사실에 대한 인지 이후 조치 미흡 등

### 일임매매 관련 절차적인 위반

종전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일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선물회사 등)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97).

다만, 이러한 절차적인 요건은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적인 위반만으로 민사 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일임매매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일임매매 사례 1

[대판 2009. 5. 28 선고 2006다58332]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선물·옵션거래에 대하여 위임을 받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최종거래일의 거래마감시간 직전에 신규로 대량 매수하는 행위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라고 보아 증권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은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2000. 7월 무렵에 모증권사 모지점에서 직원 B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직원B에게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매매를 일임하였는데, 2001. 5월 무렵에 △△증권으로 전직하자, 고객A도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거래처를 △△증권으로 옮겨 선물·옵션위탁계좌 2개를 개설하고 마찬가지로 직원B에게 매매를 일임하였음. 이때 대리인은 계좌개설만을 대리하였고 계좌운영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가끔 직원B와 통화하면서 계좌운영을 감시하기만 하였음
- 직원B는 2002년 4월물 KOSPI200옵션 최종거래일인 2002. 4. 11. 14 : 42분 현재 KOSPI200지수는 108.71인데 행사가격이 107.5인 콜옵션을 프리미엄 1.85에 최종거래 마감시간인 14 : 50분을 불과 7~8분 남겨두고 제1계좌에서 1,543계약(예수금의 2/3), 제2계좌에서도 2,000계약(예수금의 2/3)을 각각 매수하였음
- 직원B에 따르면, 이때 KOSPI200지수가 오전부터 1.3포인트 가까이 오르다가 오후 들어 만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13 : 00 무렵 강보합 정도로 조정되었으나 14 : 30 무렵부터 급속히 시세가 오름세로 돌아서 순식간에 전날보다 2포인트 이상 급등하자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 15 : 00 현재의 동시호가지수(KOSPI200지수)가 14 : 50의 KOSPI200지수보다 현격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1, 제2계좌에서 매수에 임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B의 예상과 달리 14 : 43부터 KOSPI200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콜옵션 프리미엄 시세가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자 B는 계획을 바꿔 제1계좌의 원주문에 대하여서만 취소주문을 냈음
- 본래 한국거래소의 KOSPI200선물·옵션 매매시스템은 회원사의 호가를 접수하는 접수프로그램과 접수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체결가능한 호가를 체결해 주는 집계체결프로그램이 별도로 가동되는데,
- 그날은 2002년 4월물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로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주문호가 폭주하는 바람에 체결지연현상이 발생하여 제1계좌 및 제2계좌 주문 또한 당초 주문시간보다 늦은 14 : 47~48분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체결 사실도 거의 14 : 50께 통보되었기 때문에 취소주문은 당연히 체결되지 않았음
- 결국, 15 : 00 KOSPI200지수는 107. 5로 B가 매수한 2002년 4월물 KOSPI200콜옵션 행사가격 107.5와 일치하여 콜옵션 행사의 가치가 상실되어 지급한 프리미엄 약 6.4억원만 손해보게 됨
- 이에 대해, 고객 A는 직원 B가 옵션 최종거래일 거래마감시간 직전에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며 만기임박으로 인해 손실을 만회할 시간적 기회조차 없게 하는 것이므로 설명 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투자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 판·단·내·용

- 대법원은 본 건에 대해 옵션만기일에는 차익거래나 투기적거래에 의한 옵션과 주식을 청산하기 위한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시세변동성이 커지고, 옵션거래는 이른바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옵션을 보유한 세력들이 만기일 15:00에 결정되는 KOSPI200지수를 토대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지수를 서로 자기가 원하는 지수대에 놓아두려고 하는 시도가 치열하여 심한 경우에는 15:00의 KOSPI200지수가 14:50의 지수보다 4~5포인트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14:50에 임박하여 형성된 지수를 토대로 15:00에 형성될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원B의 대량 콜옵션 매수행위는 고객A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대법원이 2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자, 2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판결과 유사한 수준인 손해금액의 30% 수준에서 △△증권이 배상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일임매매 사례 2

[대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고객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과다매매가 발생한 경우, 계좌지배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 과다일임매매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인 A회사가 B증권회사에 개설한 1, 2계좌의 경우 관련 직원인 D 등을 통해 관리된 '99. 8. 10~'00. 5. 4까지 약 9개월간 총 예탁금 44억원 중에 16억원 이상 손실이 났으며 그 중에 15억원이 수수료로 발생되었음
- 이후, C증권회사에 개설된 A회사의 3, 4, 5계좌의 경우 관련 직원인 D 등을 통해 관리된 '00. 5. 4~'01. 4. 13까지 전체 일임거래 중 '00. 5. 4~'00. 6. 30까지 초반 2개월여 간의 평균매매회전율이 1,696%에 이르고 총 예탁금 27억원 중 15억 여원의 손실이 집중되었음(나머지 10개월간에는 월평균매매회전율이 6~17.6%에 불과하였음)



#### 판·단·내·용

- B증권회사의 경우 전체 일임매매 기간인 '99. 8. 10~'00. 5. 4에 손해액 대부분인 15억원이 수수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과다매매로 인정됨
- C증권회사의 경우에는 B증권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 일임매매 기간인 '00. 5. 4~'01. 4. 13까지 전체 일임매매 기간을 과다매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기간인 '00. 5. 4~'00. 6. 30까지 초반 2개월여 간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과다매매가 성립됨
- 다만, 고객인 A회사가 HTS를 통해 주식거래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증권회사로부터 거래내역, 잔고현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이익제기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고



- 또한 A회사가 일임거래를 종료하면서 그 때까지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후 '잔고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주식거래결과인 투자손실을 모두 추인 또는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B증권회사, C증권회사에게 각각 40%, 30%의 책임비율을 인정함(고객인 A회사의 과실비율은 각각 60%, 70%임)

### 일임매매 사례 3

[대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고객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HTS로 잔고조회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거래내역을 조회해 온 경우, 증권회사는 각종 통지 및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98. 3월경 타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경험이 있는자로서 당시 손실경험 뿐 아니라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험도 있음
- 고객A\*는 고객A와 절친한 사이로서, 타증권회사에 '01. 11월경 계좌를 개설하여 1년여를 HTS 위주로 거래하였음
- 고객A는 평소 거래가 있어 왔던 직원B가 C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기자 친구인 고객A\*와 함께 C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일체의 투자일임을 하였으나, 결국 각각 13~15억여원의 손실을 입음
- 이에, 고객A와 A\*는 C증권회사에 대해 부당권유, 과다매매 등 보호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청함



#### 판·단·내·용

- 고객A와 A\*는 선물·옵션의 거래경험이 있는 자로서 거래설명서 교부 및 설명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권유를 인정하지 아니함
- 직원B가 사용한 양매도전략(스트랭글 매도전략)은 큰 폭의 주가지수 변동 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매매전략이나, 상당수의 투자자가 동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A와 A\*의 경우에도 동 매도전략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동 전략에 따른 매매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 기타 선물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직원B가 주가지수의 변동을 잘못 예측하고 운용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점만으로 전문가로서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거나 수수료 수입목적만을 위한 과다매매로 볼 수 없음
- 고객A와 A\*는 우편통지가 아닌 전자통신 방법에 의한 거래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왔으므로 피고 증권회사C는 각종 통지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함



### 일임매매 사례 4

[고판 2005. 11. 10 선고 2004나67877]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일임을 받아 단기매매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의한 단기매매일 경우 과다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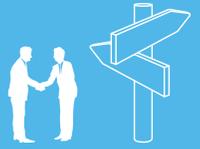
#### 사·건·개·요

- 고객A는 '97. 5. 31.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99. 10월경부터 피고 증권회사 직원B에게 증권계좌의 운용을 위탁하였음
- 고객A는 당초 종목선택, 수량, 매매시기 결정 등 중요사항은 자신이 직접 결정하여 직원B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계좌를 운용하였음에도 '00. 1월초부터 '00. 6. 10.까지는 B가 임의매매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99. 10. 1.~'00. 6. 30.까지 매매회전율은 7.112%, 손실금액 대비 수수료율은 94.76%, 미수금발생율 413.27% 등 직원B가 운용한 기간은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음



#### 판·단·내·용

- 고객A는 '00. 1월~'00. 6월까지 직원B의 임의매매를 주장하나, 당시 녹취기록 상 거래내역 및 손익내역이 당일 통보되고 시황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고객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직원B의 판단 하에 종목선택 및 매매시기 등이 결정된 점, 고객A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직원B의 계좌운용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거래내역이 정상적으로 통보된 점 등을 기초로 당해 계좌는 포괄적으로 일임된 계좌로 판단됨
- 과다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녹취기록상으로 '99. 11. 18, '00. 1. 10, '00. 1. 13, '00. 6. 15 등 고객A는 직원B에게 '매수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 말고 그날 그날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 고객A가 직원B에게 증권계좌 운용을 위탁하기 전인 '98. 10. 1.~'99. 9. 30.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매회전율 4.542%, 수수료율 2,257.71%, 미수금발생율은 604.12%에 달하는 등 B가 운용한 시점과 서로 유사한 거래형태를 보임
- 따라서, 직원B가 단기매매를 주로 하였고, 매매회전율이나 수수료율, 거래비용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만으로 불법 과다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음



## 일임매매 사례 5

[대판 2005.10.7 선고 2005다11541]

고객이 직원의 과다매매로 인한 손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원의 요청 등으로 계좌를 이관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포괄일임한 경우 기존의 과다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97. 7. 10. 피고 증권회사 동수원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98. 2월경부터 직원B가 당해 계좌의 관리자가 됨
- 이후, '99. 4월경에는 직원B가 산본지점으로 자리를 옮기자 고객A는 직원B의 부탁으로 동수원지점의 계좌를 산본지점으로 옮겨 다시 관리를 맡겼고,
- '00.2월경에는 제3자인 C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모두 이관하였다가 '00. 7월경에는 고객A명의로 다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이관시키고 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식까지 추가로 위탁하였음
- '01.4월경에는 직원B가 수리지점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이관하였음



### 판·단·내·용

- 고객A는 직원B의 매매가 임의매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A가 직접 우편잔고 통보사절원을 작성해 준 점, 때때로 A가 스스로 잔고현황을 확인하여 왔던 점, B가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근무처에 계좌를 개설해주고 종전 거래내역에 관한 잔고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임의매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음 (포괄적 일임매매로 봄)
- 고객A명의로 본 건 계좌 중 동수원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에서 14개월 동안 182회(월 평균 13회) 매매하여 수수료가 예탁금액 대비 9.38%, 손해금액 대비 105.04%에 이르고, 산본지점에서 최초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515회(월 평균 51.5회) 매매하여 수수료가 예탁금액 대비 53.16%, 손해금액 대비 108.53% 이르는 등 과다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하지만, 상기 2계좌에서 직원B의 과다한 매매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A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제3자 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주식을 이관해두었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계좌로 이관하여 계좌관리를 맡기었으며, 이후 B가 수리지점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계좌를 이관하여 포괄위임을 하였으므로 고객A는 과다매매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

일임매매 사례 6

[서울중앙지법 2008. 9. 19 선고 2007가단338309]

주식매매를 포괄하여 위임받은 직원이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을 발생시키는 매매를 반복했다는 것만으로 과다매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 A는 ○○증권 XX지점에서 '00. 2. 1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지점장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동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는데, 당시 A는 위 계좌에 합계 약 9천만원 (주식 5천만원 상당 + 예탁금 4천만원)의 예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B는 '00. 12. 5. ○○증권을 퇴사하였고, 12. 8 까지만 A의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당시 A 계좌의 주식평가액은 약 2천 6백만원임
- B가 '01. 1. 1 부터 ○○증권 투자상담사(現 투자권유대행인)로 일하게 되자 A는 B를 계좌관리자로 지정하고 주식매매를 계속 일임함
- B는 '01.7.21. 또다시 ○○증권을 그만두었는데, 그 직전인 '01. 7. 16. A 계좌의 주식평가액은 약 850만원이었음
- 이에 ○○증권은 동 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으나, A는 그 이후에도 B에게 A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일임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 B는 계속 동 계좌를 관리하였으나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채, 결국 '05. 12. 9.를 기준으로 A의 계좌잔액은 약 140만원이었음
- 한편, A는 '00. 2월부터 '01. 9월까지 매달 ○○증권으로부터 A계좌의 거래내역을 통보받았고, 직접 인터넷으로 동 계좌를 조회함으로써 계좌현황을 알고 있었음
- 결국, A는 B가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과 ○○증권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다매매를 일삼았으므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판·단·내·용

- 과다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B가 ○○증권에서 일한 '00. 2. 1~'01. 7. 21의 기간과, 회사를 떠난 후인 '01. 7. 22 ~'05. 12. 9의 기간을 분리하여 살펴봐야함
- '00. 2. 1~'01. 7. 21. 기간(537일간) 중 총 411회의 매도와 432회의 매수를 한 점은 인정되나, 거래기간에 따른 거래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증권은 매달 A에게 주식거래 내역을 통보한 점, 거래기간 동안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위임의 본지에 따른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A의 이익을 무시하고 B 또는 ○○증권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01. 7. 22~'05. 12. 9.기간중의 주식매매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동 기간 중 주식매매는 B가 ○○증권을 떠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고, B가 위 기간 동안 A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다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회사를 떠난 B로서는 무리하게 과다매매를 할 동기가 없었다할 것이므로 B의 과다매매는 인정되지 않음



## 일임매매 사례 7

[협회 분쟁조정위 2012. 5. 24 조정결정 / 2012-01호]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월매매회전율이 약 1,400%에 달하였고 단기매매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컨대 과다매매가 인정되고, 고객의 "당일 전부 처분"지시에 불구하고 직원의 지정가주문으로 일부 수량만 매도되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봄



###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사 직원에게 포괄일임한 기간(약 1개월간) 중 월매매회전율이 약 1,400%, 손실대비 수수료율이 45%에 달하였고, 특별히 단기매매가 많았어야 할 사유도 없었음
- '12. 1. 10 고객이 A종목을 "당일 전부 매도"를 지시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14:59에 지정가 주문\*을 하여 약 43,000주 중 일부(약 27,000주)만 체결되었음  
\*당시 거래소의 매수호가 잔량은 약 320,000주였음
- '11. 10. 12 증권사 직원이 B종목을 매도한 후 문자메세지로, 익일에는 전화로 고객에게 보고하였으나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도자금으로 타 종목 매수승인 사실이 확인되었음



### 판·단·내·용

- 거래기간 전체('10. 10월~'12. 1월)로 보면 과다매매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기간에서는 매매판단과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증권사 직원의 지배하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매매회전율이 약 1,400%, 손실대비 수수료율이 45%에 이르는 등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려운 매매였고, 고객의 요청 등 단기매매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과다매매가 인정 됨
- A종목 매도 관련, '12. 1. 10 정규장 마감시각 직전의 거래소의 매수호가 잔량은 약 32만주에 달하여 직원이 주문을 지정가주문이 아닌 시장가주문으로 하였더라면 전량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지정가주문으로 고객의 '당일 전부 처분'지시를 따르지 못한 것은 전문가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충신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
- 다만, B종목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문자메세지 및 전화통화로 사후보고를 하였으나 이에 고객의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매도자금으로 타종목 매수를 승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도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임의 매도라 하더라도 고객이 묵시적추인을 하였다고 판단 함

일임매매 사례 8

[대판 2012. 6. 14 선고 2011다65303]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주식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매매회전을 한 경우 과당매매로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B 증권사 직원 C로부터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 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 2,6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함
- 직원 C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학습지교육 관련 회사에 투자자 A의 자금을 전액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2009년 5월 상장폐지 됨으로 인해 그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전액 손실을 보게 됨
- 이에 투자자 A는 직원 C가 충실의무를 위반해 32개월동안 629회나 무리하게 빈번한 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B 증권사 직원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 2심은 증권거래가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점, 손실 발생 이유는 상장폐지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원 C가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 A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빈번한 회전매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함



판·단·내·용

- 대법원은 직원 C의 행위가 과당매매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함
- B 증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했다 해도,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
- 과당매매 행위 해당여부는 주식매매의 동기,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매입주식 평균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 매도 반복,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등을 참작해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직원 C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32개월 동안 상장폐지된 코스닥 주식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629회의 거래를 했다는 점, 그 기간 매매회전율이 2,045.7%(연평균 매매회전율 766%)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당매매가 인정됨
- 수수료(3,226만원)와 제비용(964만원) 등 4,190만원은 총 투자원금(3억 2,600만원)의 12.85%로 적지 않음
- 투자자 A는 직원 C가 행한 것처럼 투자원금 전부를 특정 한 종목에만 고가매수와 저가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감수할 정도의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직원 C는 주식 1개 종목에만 치중해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반복했고, 이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으며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결과 투자자 A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함



### 3. 부당권유

#### 1 부당권유란?

❖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권유행위는 투자자의 기존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당해 권유행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의 권유행위를 의미합니다.

- ①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 ②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법원을 통해 부당권유행위로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
- ②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단정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권유한 행위
- ③ 투자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매매를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당권유 관련 기본 법리

## ✦ 부당권유행위 유형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권유행위(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의2조), 설명의무(제47조) 및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등도 부당권유행위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부당권유 행위 관련 조문(요지)

## ◎ 제49조 금지되는 부당권유의 금지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제46조의 2 적정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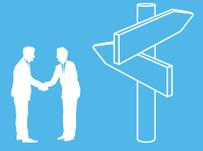
-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 ◎ 제47조 설명의무

-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

## ◎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1.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부당권유행위 판단기준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권유행위의 부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①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 ② 고객의 투자상황 (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 ③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그러나, 부당권유행위의 정도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원금)손실보전각서와 부당권유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당권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직원이 ‘원금(손실)보전각서 (또는 원금보장각서)’를 교부하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입니다.

직원이 고객을 유치하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손실보전각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무효인 손실보전약정만을 믿고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실보전각서의 효력

- 종전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전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 또는 선물·옵션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손실보전을 약정하여 투자를 결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 손실발생 시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는 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직원의 그러한 행위가 부당권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민사 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객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포함), 퇴직일시금신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부당권유 관련 절차적인 위반

다만, 상기의 법률에 규정된 부당권유행위는 규제차원에서의 행위금지 유형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9 제3호, 제4호에서 규정된 불초청권유 및 재권유금지와 같은 조항들은 행위규제 목적의 금지조항으로서, 이에 응하여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당권유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직원의 부당권유에 따라 주식 등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사후 당해 주식 등을 매도하여 얻은 매도대금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객이 손실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종합적으로 반영(과실상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부당권유의 경우 고객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부당성에 대한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의 나이나 학력, 기존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자본시장법 상 강화된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상품이 나날이 복잡화·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 부당권유 관련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원칙 (§46)**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기 이전에 투자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 시 당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어떠한 유형의 투자자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know your customer rule”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부당권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사전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왔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그 이론적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로 명문화하였는데 향후 법원이 적합성 원칙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의 원칙 (§46의2)**

자본시장법은 적합성 원칙(§46)과는 별도로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가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먼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만약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그 사실을 전자우편, 전자통신, 우편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고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원본손실만 가능한 보통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파생상품 등”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특징 외에도 만기 또는 환매 이전이라도 추가적인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익구조도 기초자산의 가격(또는 지수)이 상승 또는 하락 등 양방향 모두 해당되므로 그 만큼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대비 레버리지도 상당히 커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특히 많은 투자경험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련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항을 추가로 신설한 이유는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의무 (§47)**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명과정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중요사항’이라고 일컫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설명, 왜곡 또는 누락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법률 상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객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추정 (§48)**

- =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3 부당권유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부당권유 사례 1

[대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이 날까봐 이를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는 등의 말로 매매를 권유한 것을 부당권유로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A는 '94. 10. 17. 증권거래계좌 개설 이후 손실이 발생되자 '96.10월경 더 이상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직원B가 확실히 주가가 상승할 종목만 추천하고 A의 허락없이 임의매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B에게 계좌관리를 위임하였음
- 이후, 직원B는 '96. 10. 18.~'96. 12. 28. 사이에 임의매매한 사실이 있음
- 또한, '96.10월초에는 '☆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100% 확실하다.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이 날까봐 이를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에게 ☆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A는 10억원을 입금하여 ☆종목 4만주를 매수하였음
- 하지만, ☆의 주가는 3, 4일 정도 상승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A는 직원B에게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주가상승이 확실하므로 매도를 거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주가가 하락하자 고객A는 '96. 11. 13. 직원에게 손실보전각서라도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직원 B가 각서를 작성해 줌에 따라 매도는 보류되었음
- 결국, '96. 12. 16.에야 직원B는 2만주를 매도하였고, 고객A도 '97. 1. 31.~'97. 2. 1. 사이에 나머지 2만주를 매도함



판·단·내·용

- 직원B의 임의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함
- 직원B가 자신만이 알고 있으나 이를 밝힐 수 없는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면 ☆주식을 대량매수토록 유도하고, 고객 A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면서 매도를 거부한 것은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다만, 고객A의 경우에도 상당한 투자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확인 소홀 등으로 직원B에게 임의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B의 말에 현혹되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주식을 매수하였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B의 약속만 믿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러한 고객A의 과실을 40%로 산정함 (손해금액의 60% 만 증권회사 책임으로 인정)



## 부당권유 사례 2

[고법 2006. 8. 17 선고 2006나2746]

부당권유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경위, 고객의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성을 다소 미흡하게 설명하였다거나 선물·옵션거래의 고수익 가능성을 강조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권유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92년부터 C증권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99.6월경 D증권회사 직원인 B로부터 선물·옵션거래를 권유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B에게 운용권한을 위임하였음
- 고객A는 '99. 10월경 처 소유의 ☆주식과 ★주식을 대응증권으로 지정하여 직원B가 선물·옵션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되었고, '00. 5월경에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음에도 '99. 10월부터 '00. 7월까지의 거래결과 대응증권 및 5천만원 모두 상실되는 손실이 발생되었음
- 한편, '00. 10월경에는 직원B가 E증권회사로 이직하자 기존 D증권회사의 선물·옵션계좌를 해지하고 E증권회사에 새로운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음



### 판·단·내·용

- 고객A는 직원B를 통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이전에도 수년간 주식거래경험이 있었던 점, B로부터 처 소유의 주식을 대응증권으로 지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을 일부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양자간에 구체적인 수익보장 약정은 없었던 점, 선물·옵션거래는 투자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원금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성을 다소 미흡하게 설명하였다거나 선물·옵션거래의 고수익 가능성을 주로 강조하여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한편, '99. 10월부터 '00. 7월까지 매매거래 193회, 손해액 대비 수수료비율이 29.6%인 사실이 있으나,
- 선물·옵션거래는 주식현물거래보다 투자성이 강한 거래인 점, A가 B의 선물·옵션거래로 최종적인 손해를 본 이후에도 이직하는 B를 따라 새로운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여 기존의 거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원B가 선물·옵션 거래과정에서 A의 이익을 무시하고 영업이익만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매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당권유 사례 3

[대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과다매매의 거래기간 중 일부 거래가 부당한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증권회사  
위법성 및 책임을 가중시키는 참작사유로 고려하면 되고, 과다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사례



#### 사·건·개·요

- 피고 C증권회사 직원B는 고객A의 계좌에 대한 포괄적 일임을 받아 '00. 7월~'01. 3월까지 매매거래를 한 결과 총  
예탁금 26억원 중 23억원의 손실이 발생됨
- 이 과정에서 과다한 매매를 반복하고, D종목의 경우 거의 매일 매매를 반복하여 한 종목에서만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 한편, 거래기간 중 직원B는 손실회복에 전전긍긍하는 고객A에게 수차례에 걸쳐 추가상승이나 시세조작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일임매매를 권유하여 왔음



#### 판·단·내·용

- 과다매매의 거래기간 동안 증권회사에 의하여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가 권유된  
경우에 그러한 부당권유행위는 과다매매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참작요소가 될 수 있고, 과다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권유에 관한 개개 거래 부분에 대하여 과다매매의 성립  
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단계에서 증권회사측의 위법성 및 책임을 가중시키는 참작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개개  
거래부분에 대하여 과다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음



## 부당권유 사례 4

[협회 분조위 2008.3.12 결정, 제2008-1호]

풍문에 불과한 사항을 풍문이라는 언급없이 마치 조만간 공시될 것처럼 신청인을 오인케 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단정적·합리적 근거없는 판단제공 행위로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 사·건·개·요

- 운송업에 종사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고객A는 증권회사 직원B를 소개받고 자신의 계좌관리를 맡겼는데, 실제 직원B는 종목추천 및 주문집행을 담당하였음
- 이후, 직원B는 ☆와 ★종목에 대해 호재성 재료가 있음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매수 추천하였는데 ☆의 경우 당시 공시사항을 근거로 한 추천이었음에 반해 ★의 경우 단순한 시장풍문사항에 불과하였음
- 결국, 고객A는 직원B의 추천에 따라서 ☆와 ★종목을 매입하였으나 두 종목 모두 주가가 하락하였고 특히 ★종목의 경우 직원B가 언급하였던 호재성재료(풍문)는 현실화되지 않았음



### 판·단·내·용

- 시장에 공시된 사항을 근거로 매수추천하는 경우 매수추천이 아무런 근거 없는 본인의 단정적 판단에만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나,
- 당시 풍문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확인노력 없이 매수추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풍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마치 조만간 공시될 것처럼 고객A를 오인케 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단정적·합리적 근거없는 판단제공 행위로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직원B가 추천한 종목 중 ★의 매수추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고객A의 경우에도 직원 B의 추천으로 매수한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B의 설명만을 근거로 ★주식을 매수하였는 바, 비록 신청인이 운송업에 종사하여 시장정보의 접근이 어렵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년간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으로서 투자의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에도 자신의 재산관리에 보다 신중하지 못하여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던바, 이러한 고객의 과실을 30%로 산정함
- 다만, 직원B가 ★와 관련한 호재성재료가 풍문으로 그치는 점을 통보하면서 그 당시의 공시사항을 근거로 고객A가 계속 보유를 결정한 시점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권유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므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제외함



## 부당권유 사례 5

[서울중앙지법 2009. 9. 23 선고 2008가합122133]

증권회사 직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고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유치한 고객 자금을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경우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06. 8월경 지인을 통하여 증권회사 직원 B를 소개받았는데, 직원 B는 A에게 '(주)대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 회사에 호재가 있을 것이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투자를 하면 최고 20% 내지 4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는 직원 B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였음
- 직원 B는 투자자금 운영상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는 직원 B가 지정하는 2개의 계좌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입금함
- 그 후 A는 약속한 3개월이 다 되어가도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할 수 없자 B에게 원금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A에게 "(주)대박의 생산공장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고 추가건설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만일 추가로 투자를 한다면 빨리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A는 '06. 11. 20. B가 지정한 계좌로 약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고, 총 투자금액은 3억원이나 되었음
- 그러나 A는 투자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 판·단·내·용

- 투자권유 당시 직원 B는 A에게 '(주)대박'에 3개월내지 6개월만 투자하면 최소 20% 내지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주가 상승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을 경우 원금보장을 하겠다는 약정까지 하면서 투자권유한 점
- A는 주식투자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는데도 직원의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 했고, 특히 투자권유를 받을 당시 동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객관적인 호재는 없었는데 단지 B가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었던 점
- 또한 직원 B는 A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계좌의 잔고나 거래현황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원하는 시기에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인출할 수도 없었던 점
- 직원 B는 주식거래 기간 동안 A에게 구체적인 거래내역, 잔고상황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로부터 투자상황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막연히 "잘되어 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대답한 점
- 직원 B는 A에게 추가공사 수주로 인하여 곧 주가가 급등하니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투자를 권유하여 추가자금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주가 급등의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직원B는 A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권유행위로 판단함
- A의 손해는 직원 B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 전체인 3억원 상당이라 할 것이나, A가 직원 B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한 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현황을 알 수 없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린 점, 투자금을 교부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호재로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직원 B의 말만 믿고 추가로 투자금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객 A의 과실을 65%로 보아 직원 B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부당권유 사례 6

[서울중앙지법 2011. 6. 3 선고 2010가합26870]

증권사 직원의 주식투자 권유 시 고객이 투자성향을 보수적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과거 파생상품 및 주식 투자경험이 있었기에 부당권유로 보기 곤란함



### 사·건·개·요

-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였으며, 2004년 9월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설문지에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고 기재하였고
- 동 일임거래와 관련하여 직원은 4년 5개월동안 약 200회의 매매를 반복하였고 수수료 총액(약2,800만원)은 원고 예탁 금액(약1.5억원)의 약 38% 수준



### 판·단·내·용

- '04. 9월 고객은 증권사 직원에게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설문지에 투자성향은 '이자소득 중시', 투자위험 수용도는 '원금손실을 절대 허용하지 않음', 투자선호는 '은행예금·은행신탁 상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 고객이 이전부터 다수의 파생상품 및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직원이 원고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증권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고객이 당초부터 주식매매를 위임한 점, 우편으로 잔고통보를 받고도(2007. 9월~10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증권사에 추가로 자산을 위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매매로 볼 수 없음
- 약 4년 5개월 동안 약 200회 매도·매수 반복은 그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기간 중 발생한 수수료 비중이 원고가 예치한 금액의 약 38%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월별 매매회전율이 높을 때에는 수익을 낸 경우도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다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고객의 주장은 이유없음



### 부당권유 사례 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9. 12. 18 선고 2008가합9983]

증권사 직원의 주식 과다매매가 있었는데, 이 경우 고객과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봄



#### 사·건·개·요

- '99년 4월부터 고객은 증권사 담당직원에게 본인·가족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 이후 지속적으로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은 증권사 직원과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하고 동 직원이 약정금액(약 1.5억 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 판·단·내·용

- 증권사 직원(A)이 포괄일임을 받아 주식을 매매한 기간('99. 4월~'03. 12월) 중 매매회전율은 4.5회,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은 30%로 동 기간 전체 매매가 과다매매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기간('00. 11월~'02. 2월)의 경우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1,341%에 달하는 점,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매매한 종목 비중이 67%에 달하는 점, 단기매매와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기간 중 주식매매는 과다매매에 해당 함
- 고객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한 시점('04. 9월)에 증권사 직원의 주식거래행위가 과다매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08. 10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 '05. 5월 증권사 직원A가 고객에게 3천만원을 변제해 주면서 작성된 영수증에는 직원A는 '차용자'로 직원A가 근무 하던 지점의 지점장인 B는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점장 B가 직원A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고객이 지점장B나 피고 증권사에 대하여 상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피고 증권사가 직원A의 과다매매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채무승인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고객은 증권사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직원A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05. 4. 27까지 피고사의 처리방침을 회신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당 문서에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던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문서전달을 최고로 보기는 어려움



## 부당권유 사례 8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매수/매도 종목·수량·일시까지 정해진 투자권유는 법이 정한 자문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



### 사·건·개·요

- 2008년 6월 원고인 고객 A부부는 케이블 방송사의 홈페이지에서 주식강사로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피고 B의 강의를 보고 투자자문을 받기로 결심, 회원가입비로 각자 500만원을 내고 컨설팅업자 B의 컨설팅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 고객 A부부는 컨설팅업자 B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매도 종목·수량·일시까지 정해진 투자권유를 받아 주식거래를 했지만 8,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냄



### 판·단·내·용

- 케이블방송 주식강사로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B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손해를 본 고객 A부부에게 B는 손해액의 70%인 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 컨설팅업자 B의 투자업체는 정식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했어도 구체적인 주식 종목과 수량, 일시를 정해 매수 또는 매도 권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이 허용하는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함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1: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다만, 고객 A부부에게도 컨설팅업자 B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신중히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가운데 30%의 책임을 물음
- 또한 케이블 방송사도 계약을 맺고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다며 컨설팅업자 B와 연대해 손해액의 절반인 4,900여만원을 배상토록 함



부당권유 사례 9

[서울동부지법 2012. 6. 13 선고 2011가합15764]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허위 정보로 고객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해 손해가 났다면 증권방송에게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고객손실의 일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사례



사·건·개·요

- 피고 A주식회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주식회사와 증권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일정비율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 인터넷증권방송에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증권방송을 진행함
- 원고인 고객 C는 '11. 1. 18 A 인터넷 증권방송에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B가 진행하는 방송사의 주식정보 서비스(인터넷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이용함
- 원고인 고객 C는 '11. 2월부터 3월까지 방송진행자 B가 적극 추천하는 D전자에 4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업체는 같은 해 4월 상장폐지되었고 결국 원고인 고객 C는 3억 8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A 인터넷 증권방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단·내·용

-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허위 정보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해 손해가 났다면 고객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터넷 증권방송과 방송진행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임
- 특히 인터넷 방송사 A는 객관적·규범적으로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진행자 B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함
- 다만, 방송진행자 B가 허위 정보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원고인 고객 C의 책임이 더 크다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85%로 인정하고 피고인 인터넷 방송사 A와 방송진행자 B의 배상액을 감경함 즉, 원고의 손실 금액 3억 8천만원 가운데 15%인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함



## 부당권유 사례 10

[서울북부지법 2009. 5. 15 선고 2008가단66235]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무상증자 신주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증권사 직원 및 사용자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07. 9월부터 B 증권사의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B 증권사의 C 직원과 관심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주식매매 조연과 자료를 받으며 주식매매를 의뢰하기도 함
- B 증권사의 C 직원은 '07. 11. 9. 전화로 투자자 A에게 D주식회사가 2배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며 공시에 적혀 있는대로 11월 12일 오후 5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2배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조연했고, 이에 투자자 A가 C 직원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2억원 상당의 물량을 받는거냐고 묻자, C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
- 투자자 A는 이에 '07. 11. 12. 오전에 신용융자물량분을 포함해 7,300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으나,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 기준일 3일전인 '07. 11. 9. 까지 매입해야 했음
- 그 외에도 투자자 A는 같은 방법으로 E회사 및 F 회사의 주식도 권리라락 이후 매수하였으나 세 건 모두 무상증자 신주를 받지 못해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판·단·내·용

- B 증권사 직원 C는 투자자 A에게 주식거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의 개념을 잘못 알고서 원고에게 권리라락이 발생한 후에도 주식을 매입하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여
- 이를 믿은 투자자 A가 권리라락이 발생한 후에 주식을 매입하여 무상증자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B 증권사 직원 C 및 사용자 책임이 있는 B 증권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투자자 A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직원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직 직원의 잘못된 설명만 듣고 주식을 매수한 과실이 있는 점,
- 권리라락 이후 투자자 A가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한 점, 권리라락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 들었고 그에 따라 무상증자분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증권사 및 증권사 직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부당권유 사례 11

[대법원 2016. 2. 11 선고 2014가단148849]

과거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지인에게 투자위임을 한 후 손해를 봤을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 사·건·개·요

- 스님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가 증권회사 출신으로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권유하였고, 귀가 솔깃했음
- A는 B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음
-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음
- 투자금의 16%만 남은 A는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 판·단·내·용

-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
- 수익금에 대한 50:50 분배 약정도 손실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A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성공의 다짐 또는 각오에 불과



## 부당권유 사례 12

[헌법재판소 2017. 2. 11 선고 2014헌바459]

단정적 표현을 써가며 금융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의 합헌 결정



### 사·건·개·요

- A는 1999.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10. 4.경부터는 학교법인 ○○공과대학의 기금운용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A와 ○○자산운용은 A가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공대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의 위험 정도,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 등 불확실한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대박 나는 거다', '다시는 없다', '단연코', '완벽하게',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2013. 12. 13.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음
- A와 ○○자산운용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445조 제6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되자 2014. 11. 26. 자본시장법 해당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판·단·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항의 불명확성에 대하여,
- 해당조항은 위험성이라는 금융투자의 본질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확보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사항이란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판단의 주제 및 기준이 명확함
- 문언상 '불확실한 사항'의 객관적 범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불확실한 사항'의 대상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유형을 예상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

## 4.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 최근 중요한 분쟁유형으로 부각

❖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되어 있는 펀드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등과 같은 투자중개업자, 자산운용회사는 물론 은행, 보험회사 등 거의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 범국민적 재테크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령대, 지식정도, 소득수준 등의 면에서 투자계층이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경험 등이 취약한 투자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몇 년 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모 파생상품 관련 펀드에 대한 정승사례에서 보듯이, 한 종류의 펀드 및 금융투자상품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모자진 전문학적인 투자금액이 운용되므로, 만약 어느 한 종류의 펀드나 금융투자상품에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펀드를 포함한 한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 또는 법원판결이 나올 경우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다른 가입자들이 잇달아 유사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입자 단체 또는 가입자 전체가 단체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쟁송의 결과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 그 파장은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타 금융기관과 심지어 전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불완전판매 관련 기본 법리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적용되는 기본 법리는 위에서 설명한 부당권유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 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당권유의 금지(§49), 적합성 원칙(§46), 적정성의 원칙(§46의2), 설명의무(§47) 및 손실보전 등의 금지(§55)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만약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각각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였거나, 상품에 대한 위험도 및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원금보전을 약속하였거나 하는 등의 행태가 수반되어 고객의 투자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3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

[협회 분조위 2011. 3. 11 결정 / 제2010-44호]

증권사 직원이 안정추구형 투자자인 고객에게 직원 자신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펀드를 동 고객에게 투자권유하면서 펀드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게 설명하여 고객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저해한 경우라면 직원이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은행에서 수시입출금식, 정기적금 등 금융거래를 해오던 고객으로서, 그동안의 거래로 담당직원 B와도 어느 정도의 친분이 쌓였음
- 그러던 2007년 8월 경에 직원 B는 고객 A가 평소에 은행예금 등 안정추구적인 투자성향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판촉행사 중인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를 투자권유하면서,
- 직원 자신도 동 상품에 대해서 많은 시간동안 학습하지 않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동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및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
- 즉, "만기 시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이상 하락하더라도 이중에 40%는 공제하고 나머지 10%만이 손실에 해당되지만 이중에서도 7~8%만 고객이 책임지면된다" 며 상품의 손익구조를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 판·단·내·용

- 담당직원B는 고객 A와의 금융거래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대해서 익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직원 자신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위험의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였고,
- 동 펀드상품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낮은 비율만 부담하면 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설명하여 고객 A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다만, 고객 A는 오랫동안 예식장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경험 정도가 낮은 편이 아니고, 과거 펀드에 가입한 경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직원 B의 말만 믿고 각종 투자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및 검토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가입서류 작성도 직원 B에게 맡기면서 추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고객의 과실책임을 75%로 인정하여 △△은행에게 전체 손해발생금액 중 25%만 배상하라는 조정결정함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2

[서울지법 2006. 3. 22 선고 2006가합63582(본소),  
2006가합111122(반소)]

직원이 펀드 투자권유 시 고객에게 원본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원의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증권회사에서 거래해 오던 자로서 동 증권회사를 통해 '00. 1. 24. 부터는 주식형뮤추얼펀드, 전환사채(CB), 일본국고채 및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경향이 있음
- 그러다가 직원B는 일본국고채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인 '05. 4월 경에 맞추어 ○○○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을 투자권유하여 결국 고객A는 '05. 4. 28.과 동년 5. 9.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하였음
- 당 상품의 특징은 코스피200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코스피200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구조로 설계된 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이었음
- 그러나 직원B는 당 상품에 대하여 코스피200지수가 943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본국고채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대신 고객A의 특성에 맞게 작성했다는 '안내문'만 교부한 바 그 안내문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만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손실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또한, 직원B는 투자설명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을 고객A가 두 건의 펀드에 가입한 이후인 '05. 5. 26. 에서야 비로소 작성·교부하였음
- 이 후, 고객A는 '05. 6. 15.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원본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직원B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점에 환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환매를 한동안 보류하였고, 계속하여 직원 B와 환매시점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
- 결국, 고객A는 '05. 12. 22.에야 펀드 두 건 전부 환매하여 13억 9,175만원의 잔여금액을 지급받아 약 6억 정도의 투자손실을 봄



### 판·단·내·용

- 직원B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소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은 고객A의 과실을 60% 인정하여 △△증권회사는 전체 손해금액 중 40%만 배상할 것을 판시 함
- 직원B는 투자권유 시 당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특히 가입 당시에도 투자설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손실가능성을 제외한 '안내문'만을 교부하는 등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상품의 특성, 위험도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직원B는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고객A의 손해를 초래한 바, 직원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이 성립함
- 다만, 고객A의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수령하여 코스피200지수가 상승할 경우 원본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원B와 환매여부를 상담하는 등 환매를 지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고객A가 자기 판단으로 충분히 환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평가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고객A의 과실비율을 60%로 상계하여 총 손해금액의 40%만 △△증권회사의 책임으로 인정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3

[부산지법 2009. 9. 23 선고 2009가합1057]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고객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면 고객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고객이 인장이 임의로 날인된 것임을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와 그의 처A'는 '05. 12. 13. △△증권 직원 B의 권유로 2star-XX파생 상품펀드 18호에 각각 약 2억원을 투자하여 가입하였는데, '08. 12. 16. 동 펀드에 대한 환매대금은 각각 5천만원이었음
- A와 A'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 B는 연말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A와 A'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모든 자금을 동 펀드에 투자하였고,
- 펀드의 내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동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와 약관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상에는 A와 A'의 인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단·내·용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찍혀진 도장자국이 고객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만약 A와 A'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확인서가 작성된 것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A와 A'에게 있다 할 것임
- '05. 12월 경 △△증권 직원B가 A에게 MMF, RP, 채권에 투자하는 제1안(안정성추구), MMF, RP, 채권, XX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하는 제2안(안정·성장 추구), MMF, RP, XX파생상품펀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제3안(성장추구) 등 세가지 투자제안서를 제시하자,
- A는 '05. 12. 8. 직원 B에게 “제2안에 맞추어 다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B는 다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첨부하여 A에게 보내어 A와 A'가 그 투자제안서에 따라 본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와 A'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련·판·례

-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도장 자국(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찍혀져 드러난 도장 자국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4

[서울중앙지법 2009. 5. 29 선고 2008가합100409]

고객이 고령의 나이에 투자경험도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결정 시 투자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한 사정이 있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 A는 '07. 7. 5. 증권회사 XX지점에 펀드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 B의 투자 권유로 만기가 2년 1개월인 XX파생상품펀드 32-1호에 6천만원을 가입하였고, '08. 2. 19에는 A가 보유하고 있던 XX 주식형 펀드의 환매금액 1억원으로 만기 2년 1개월인 XX파생상품펀드 66-1호에 추가로 가입함
- XX파생상품펀드 66-1호의 수익구조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XX파생상품펀드는 만기가 2년 1개월이고 펀드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LCD 보통주와 ▲▲지주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계약)에 투자
  - 조기상환조건 : 매 6개월 비교시점마다 ●●LCD와 ▲▲지주 보통주 증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 대비 6개월 80%, 1년 75%, 1년 6개월 70%, 2년 65% 이상이거나, 투자기간동안 동일 일자에 두 종목 모두 최초기준주가대비 15%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 연 15.2%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함
  -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 ① 2년 만기 시 투자기간 중 한 종목이라도 장중을 포함하여 50%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 연 15.2% 수준의 수익을 지급
    - ② 2년 만기 시 투자기간 중 한 종목이라도 장중을 포함하여 50%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한 종목의 수익률로 원금손실이 발생
- XX파생상품펀드 32-1호도 동 펀드와 유사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두 상품 모두 투자설명서 상에 “본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펀드로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만기 시 특정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투자한 원본의 100%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었고 이에 A가 자필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 또한, A는 지병이 있는 77세의 노인이고 고위험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임에도, 직원 B는 각 펀드에 관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고위험의 파생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가입 이후에도 6개월이 넘도록 그 운용현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A로 하여금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하였는바, 증권회사와 직원 B가 연대하여 1억 6,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내·용

- A는 77세의 노인이고 고위험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A가 직원과 각 펀드에 관한 거래를 할 당시에 항상 A의 배우자와 함께 증권회사의 영업점에 내점하여 상담한 후 펀드에 가입한 점
- 특히, A의 배우자는 총 24회에 걸쳐 펀드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중 3개 상품은 본건의 펀드와 같은 수익구조로 위험한 상품이었던 것으로 보아, 본건 펀드의 수익구조 및 원금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 본 펀드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100%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A가 스스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5

[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나7750]

추가연계증권(ELS)의 경우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설명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투자자가 자필로 서명했다면 직원이 설명·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군인으로 약 25년 동안 근무하고 대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A'는 처이고 B, C는 자식임
- '04. 6. 24. A는 자식인 B, C를 대리하여 A'는 본인명의로 ○○증권의 직원 D의 투자권유를 받아 ○○증권이 발행하는 “○○증권 제73회 ELS”를 매입하였는데 동 ELS의 수익구조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동 ELS는 만기가 3년이고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 최초기준가격은 납입일(6. 30)의 KOSPI200지수 증가, 행사가격은 최초기준가격×110%, 중간기준가격은 중간평가일의 KOSPI200지수 증가, 최종기준가격은 만기일의 KOSPI200 지수증가
  - 조기상환조건 :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KOSPI200지수가 행사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연 7%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 ① 최종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원금 + 21%(연 7%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
    - ② 최종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금×111%×[200%-(최종기준가격/최초기준가격)×100%]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최대 원금 전액의 손실도 가능
- 처 A와 자식 B는 '06. 11. 3. 자식 C는 '06. 11. 6. 동 ELS를 해지하여, 처 A'는 매입금액 약 2억원 중 약 7천만원, B는 약 3억6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C는 약 7천5백만원 중 약 2천4백만원을 상환받아 투자손실이 발생함
- A', B, C는 직원 D가 동 EL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 등에 대한설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이 보장되고 연 7%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하고, 동 ELS 관련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설명·교부 의무를 위반하였고
- A와 A'는 다소 고령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D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 권유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함



### 판·단·내·용

- A', B, C는 ○○증권 직원 D로부터 동 ELS에 관한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받지않았으므로 설명·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 동 ELS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투자설명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약서, 위험고지문 등에 처 A'는 본인이 직접, 자식인 B와 C는 대리인인 남편 A가 서명, 날인하였다면 투자설명서 교부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 직원 D가 실제 명의자인 B, C에게 직접 위와 같이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인 남편 A에게 설명하고 교부한 이상 B, C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설명·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등 참조)
-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도, A와 A'가 투자목적기재서에 “투자수익률을 고려 하나 원금보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위험에 대한 태도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동안 A와 A'가 자기 또는 B, C의 대리인으로서 ○○증권을 통해 거래한 금융투자상품 중에는 XX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B1, XX비과세고수익고위험혼합B2, XX인덱스프리미엄주식형 뮤추얼펀드와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들도 있고, XX증권 제50회 ELS, △△채권투자신탁1-6호 등과 같이 ELS나 이와 유사한 ELF 상품도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B, C, D가 원금손실이 있는 상품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6

[대판 2011. 7. 8 선고 2010다10752]

펀드의 원금손실가능성이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등 고수익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들은 장외파생상품펀드에 가입(2005년 11월~)하면서 '청약신청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임과 상품의 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들은 각 확인란에 확인 표시를 하였음
-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들은 판매 시 본 펀드가 고수익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음
- 피고 자산운용사는 본 펀드 상품의 광고지, Q&A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에 본 펀드의 신용평가 등급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기재하여 마치 우리나라 국채와 유사한 안정성을 보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작은 글자체로 기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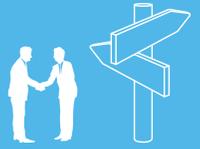
### 판·단·내·용

#### - 원 심 -

-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들조차도 본 상품의 구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수익이며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하여 판매한 점이 인정됨
- 피고 자산운용사는 광고지, Q&A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게재하였으나 그 글자체가 작거나 강조되지 아니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 이로 인해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나지 않는 한 본 펀드도 원금 손실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 다만 고객들이 약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 손해발생이 근본적 원인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함(고객 과실상계 비율 60%~70%)
- 일부 고객이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고, 그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거나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항 소 심 -

- 고객들의 자금운용방식,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매입 당시의 이자율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 및 운용사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고객들은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적어도 연 5%정도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 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고 피고 회사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손해액 산정 시 펀드 매입일부터 환매일 까지 연5% 이자율에 의한 수익(특별손해)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7

[서울중앙지법 2010. 6. 8 선고 2009가합65688]

펀드 매수자가 고령이지만 투자경험이 있고 기초자산 구성을 제안한 것이 있었던 점, 손해발생 여부를 문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가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사·건·개·요

- 2007년 8월~9월 간 원고 및 그 가족 등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ELS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였고 동 펀드를 담보로 피고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 원고는 과거에 ELS 또는 주가지수연계형 펀드에 15회 가입하였고 투자금액이 최대 65억원에 이르기기도 하였음
- 펀드가입 후 원고는 피고 증권사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가 났는지를 문의하였음
- 펀드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자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음



### 판·단·내·용

- 원고가 비록 고령이나 약 6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기업인으로서 과거(2005년 7월~)에도 펀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있고, 자신이 직접 펀드의 기초자산 구성을 제안하였던 점에서 단순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펀드 가입 전에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펀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의하였기 때문에 동 펀드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 원고가 서명한 투자신탁가입신청서 및 상품제안서, 위험고지문에는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펀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고령의 노인에게 위험성이 높은 펀드를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8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0271]

역외펀드에 가입하였지만 선물환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헤지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특성 및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함



사·건·개·요

- '05년 및 '06년 10월, 고객은 피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역외 펀드(日소형주펀드)에 가입하면서 엔 환율 하락에 대비한 엔화 관련 선물환 매도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물환 정산금을 지급하는 손실이 발생함



판·단·내·용

- 선물환 매도 계약은 환율 하락 시 손실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환율도 급등하는 경우에는 펀드 손실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의 위험에도 추가로 노출됨으로써 다액의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직원의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고객이 선물환 계약의 구조, 특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역외펀드에 가입하거나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험도 없고, 선물환 계약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고객에게는 선물환 계약의 위험성 및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
- 고객이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 서류'에는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험을 추상적으로 알리는 내용 이상의 어떠한 구체적 기재가 없으며,
- 원고에게 교부된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에도 선물환 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 손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선물환 계약 체결 당시 기본적인 환헤지 기능과 함께 환율의 하락이 전망되므로 그 방어책으로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을 뿐이고 그 특별한 위험성 및 환율이 상승하였을 경우의 구체적인 손실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함
- 다만 고객도 신중한 검토없이 피고회사 담당직원 권유를 그대로 따른 점,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고객이 일부 역외펀드의 선물환 계약에서 이익을 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고객의 과실상계 비율 70%)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9

[대법 2015. 5. 26 선고 2014다17220]

생명보험사가 손실 예측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비록 상품 판매자인 증권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 증권사는 B 자산운용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B 자산운용사의 사모특별투자신탁 상품을 판매, 원고인 C 생명보험은 A 증권사로부터 동 상품을 90억원어치 매수함
- 동 상품은 D 항공사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E 유한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SPC는 중고항공기, 스페어 엔진 등을 구매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 후 이를 펀드 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D 항공사 계열사인 F 항공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대여하며, F 항공은 항공료 수입으로 SPC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SPC는 이 임대료로 어음을 상환하는 구조임
-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C 생명보험은 판매자인 A 증권사가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A 증권사가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C 생명보험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함
- 항소심은 A 증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함



### 판·단·내·용

- C 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 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 증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함
- C 생명보험이 A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투자권유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원고가 펀드 구조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원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A 증권사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을 함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0

[대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증권사가 부실기업 기업어음(CP)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주장 하더라도 투자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는 사례



사·건·개·요

-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경험이 있는 대리인 A는 2010년 10~11월 원고인 친척 B와 C를 대리해 피고인 D 증권사 모 부장의 권유에 따라 F 건설이 발행한 CP(기업어음 A3- 등급)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투자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중 9번째인 A3- 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
-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던 F 건설은 2011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CP 변제를 못받게 됨
- 원고인 B 등은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CP)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과 2심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증권사에 각각 60%, 3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판·단·내·용

- 원고의 대리인이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어 기업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증권사는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원고의 대리인에게 투자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함
- 당시 증권사의 투자설명자료에는 A3- 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대리인의 투자경험과 업력 등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 대리인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1심) 증권사 60% 책임 ⇨ (2심) 증권사 30% 책임 ⇨ (3심) 증권사 책임 없음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1

[대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환매 관련 설명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만기시점이 아닌 중도환매를 권유한 시점으로 한정판 사례



### 사·건·개·요

- 2004년 8월 원고 A는 피고 B금융기관의 권유로 2007년 8월 만기인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만기시점에 원금 9,900여만원의 손실을 입음
- 원고 A는 수익증권 매수 당시 62세 남자로 이전에는 정기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왔고 고수익·고위험을 수반하는 파생금융투자상품이나 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었음
- 동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KOSPI 200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기시는 물론 만기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 투자신탁의 상품설명서에는 중도환매시에는 원금에서 환매수수료만 공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B금융기관의 직원도 만기시의 원금손실 가능성만 설명하였을 뿐 중도환매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음
- 원고 A는 가입후 1년이 경과시점에 피고 B금융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손실이 50% 정도 발생하였고 신속한 환매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에게 원금 전액의 보장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중도환매요청을 하지 않아 만기까지 가게 되었으며 피고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단·내·용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위험을 포함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
- 원심은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9,900여만원 손실액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수익증권 매수권유를 하면서 수익증권 특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부터 원금의 50%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전액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과 중도환매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된다고 판단하여 중도환매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결과 발생한 손해는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함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게 된 손해의 범위를 만기시점이 아닌 중도환매를 권유한 시점으로 판시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임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2

[서울중앙지법 2015. 1. 9 선고 2013가합70946]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특정금전신탁을 가정주부에게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는 것과 높은 이자율만 강조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가정주부 A는 2007년 B 금융회사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며 2억원을 맡김
- B 금융회사는 당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은 8%”라고 설명하며 확실하고 좋은 상품이라 빨리 마감될것 같다며 가입을 부추겼으나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은 대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다고 2년뒤 투자자 A는 원금을 모두 잃음
- 특히, 특정금전신탁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신탁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손실위험 설명 확인서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과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 '예'란에 B금융회사 직원이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날인함
- 가정주부 A는 B 금융회사를 상대로 B 금융회사가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2억원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B 금융회사는 가정주부 A가 손해 본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B 금융회사 직원은 가정주부 A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품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함
- 또 통장표지에도 저축성 통장이라고 적혀 있어 가정주부 A가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에도 B 금융회사 직원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B 금융회사는 손실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힘
- 다만 가정주부 A도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특정금전신탁 가입 이전에도 투자위험도가 낮기는 하나 어느 정도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 또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던 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 금융회사 직원에게 대리 서명을 부탁한 책임이 있어 B 금융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3

[서울중앙지법 2012. 3. 15 선고 2011가단195363]

해외펀드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만 강조하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환차익 과세로 인한 수익률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B 금융회사 지점장 C를 통해 3억 6천만원을 D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함
-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함
-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 A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됨
-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투자자 A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 7천만원에 불과했고 투자자 A는 환차익 과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펀드판매회사인 B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재판부는 펀드 판매회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B 금융회사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투자자 A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차익 과세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함
-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 가입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함
- 과세 여건의 변경은 투자자 A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 A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 환매여부 등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한정함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4

[서울중앙지법 2010. 7. 16 선고 2009가합51047]

역외펀드 투자 관련하여 투자자의 지식정도 및 투자경험에 따라 펀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수준을 차별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달리 한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 A 등 5명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주식형 투자신탁이거나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 투자신탁 즉,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원금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들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설정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역외펀드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가입함
- 원고들은 역외펀드 가입당시 담당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환헤지를 위해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만기시 선물환율과 만기시 시장환율과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정산지급하는 차액결제 방식)하고 정산조건은 만기시 선물환율보다 시장환율이 하락하면 은행이 정산금을 부담하나, 반대의 경우는 투자자가 부담함
- 2001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였으며 2007년 11월 경은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까지 하락. 다수의 경제연구소는 원/달러 약세를 예상했으나 2009년 9월경부터 환율이 급등하여 1,400~1,500 원대까지 상승함
- 투자자 B의 경우 펀드 및 선물환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함. 투자자 C는 동 펀드들에 가입 이전 2004년부터 다수의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을 경험한 바 있음



판·단·내·용

-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는 투자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로 투자자 A 등 3명에게는 1억 1천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으나, 투자자 B 및 C의 청구는 기각함
- 선물환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A 등에게는 금융회사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차손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함. 다만 투자자들도 역외펀드나 선물환 계약의 내용, 구조, 위험성 및 환율의 동향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과실이 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환차손액의 4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
- 펀드 및 선물환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한 투자자 B나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은 투자자 C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5

[청주지법 2010. 1. 3 선고 2009가합2924]

해외펀드 가입과 함께 환율헤지를 위한 선물환 계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관련서류에 고객 이 단순히 서명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사·건·개·요

- 원고인 투자자 A는 대학교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1997년부터 B 금융회사와 거래하였고, B 금융회사의 VIP 고객으로 남편의 자산관리까지 함께 맡겨왔으며, 그동안 B 금융회사 직원 C의 권유로 환매조건부채권, 혼합투자신탁펀드 등에 투자경험이 있음
-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투자자 A는 B 금융회사 직원 C의 권유로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본인 및 남편 명의로 각각 가입함
- 동 펀드는 일본 엔화로 투자했다가 환매할 때도 일본 엔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도 있어, 환헤지(hedge)를 위해 엔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함
- 동 선물환 계약은 만기일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회피 장치일 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오히려 환차손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나 투자자 A 등은 엔화 가치가 상승해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으며, 환율상승 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물어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B 금융회사는 원고인 투자자 A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물환 계약의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신청인 날인만 받았을 뿐이라며 환율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특히 B 금융회사의 C 직원이 당시 원고에게 해외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을 뿐 환율 상승시의 환차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A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다만, 투자자 A도 선물환 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 환율동향 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B 금융회사 직원 C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다면서,
- B 금융회사가 투자자 A에게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6

[대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역외펀드 투자자가 선물환 계약시 첫 번째 계약 만기일에 투자위험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동일상품에 대한 두번째 계약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07년 2월경 B 금융회사의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 해당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엔화로 환매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어 투자자 A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음
- 투자자 A는 펀드가입 후 9개월만인 2007년 11월경 1차 선물환 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료된 후 2008년 2월경 다시 2차 선물환 계약을 맺음
- 투자자 A는 2차 계약의 만기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 계약을 해지 하였으며, 당시 환율변동 등을 포함한 투자자 A의 손해액은 3억 5천여만원으로 금융회사는 이를 제외한 5,200여만원을 지급함
- 투자자 A는 선물환 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금융회사가 1·2차 환차손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2심은 원고가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금융회사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낮춤



#### 판·단·내·용

- 2차 선물환 계약에 관해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함
-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 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천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말하고, 이 무렵에는 선물환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하며 금융회사가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함
-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융회사 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금융투자회사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7

[대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투자권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11년 5월 B 증권사로부터 C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 상품을 소개받음. 동 상품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변동하는 선물옵션거래 관련 상품임
- B 증권사는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수익을 내고 손실이 크지 않은 안전한 상품으로 안내했고, 투자자 A는 이 상품에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음. 투자자 D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1억 5,100여만원을 투자함
- 그러나 2011년 코스피200지수가 급락해 투자자 A는 2억 3천여만원을, 투자자 D는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음
- 투자자 A와 D는 투자손실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B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 B 증권사는 C 투자자문사와 고객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을 소개해주고 매매 수수료만을 취득했을 뿐, 기타 다른 수수료를 얻은 바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내·용

- 증권사가 직접 상품을 담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는데 그쳤더라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임
- 대법원은 투자자 A와 D가 B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이 판결로 B 증권사는 투자자 A에게 3,200여만원, 투자자 D에게 2,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함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의무준수의 주체를 금융투자업자로 정하고 있을 뿐 직접 취급하는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체결을 권유했고 고객이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권유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그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함
- 앞선 1, 2심도 투자자 A와 D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8

[서울중앙지법 2013. 5. 2 선고 2012가단212272]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신규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등 투자신탁상품 판매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07년 4월 B 금융회사 직원 C의 권유에 따라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고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12년 3월 환매신청을 한 결과 5,500여만원만을 받음
- 투자자 A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12년 8월 사용자책임을 물어 B 금융회사에 소송을 제기함



판·단·내·용

- 법원은 금융회사 직원 C가 투자자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다면 B 금융회사는 소속직원 C의 불법행위로 투자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금융회사 직원 C가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투자자 A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가입신청서를 금융회사 직원 B가 대신 작성한 점, 투자자 A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 무렵 투자자 A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 직원 C가 투자자 A의 계좌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300~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 금융회사 직원 C가 투자자 A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펀드의 위험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함
- 다만 투자자 A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융회사 직원 C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점,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 금융회사 직원 C가 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400여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19

[부산지법 2011. 5. 24 선고 2010가단26093]

고령자에게 원금손실 위험성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로 투자권유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고령투자자인 A(79세)와 B(81세)는 2008년 2월 C 금융회사 지점 D 직원이 판매하는 투자신탁 상품에 각각 4,800만원과 2,000만원을 투자함
- 이 상품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상품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상품임
- D 직원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 A와 B에게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펀드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음
- 이후 투자자 A는 2,100만원, B는 874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상품설명서에 Worst Performer 기준이 빠져있고 직원이 따로 설명한 적도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이 사건 펀드가입은 무효가 되므로 금융회사는 펀드가입액 중 만기시 투자자가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상품설명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Worst Performer 기준은 만기에 OO중공업, XX전자 중 어느 종목을 비교주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만기 상환금액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고객인 원고들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할 중요사항임



### 판·단·내·용

- 금융회사의 과실을 60% 인정해 투자자 A에게 1,258만원, B에게 52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해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힘
- 상품설명서에 Worst Performer기준이 삭제돼, 마치 만기에 OO중공업, XX전자 중 하락률이 큰 주가가 아니라 위 각 주가를 비교주가로 만기상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 판매직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기상환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만기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해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투자자들도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했으면 이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 자세히 검토한 후에 펀드에 가입했어야 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0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8277]

투자 자료와 설명서에 “투자자 원금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란 문구와 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 등 5명은 2006년 B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에 7억 8천여만원을 투자함
- 하지만 이후 이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이들은 원금 중 6,600여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배당금도 2억 2천여만원에 그치는 등 손실을 입음
- 이에 투자자 A 등은 구체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잘못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증권사가 선박투자회사 측에서 제공한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설명을 했다면서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 1심 법원은 투자설명서 등 판매보조자료에 쓰인 “투자자는 만기시 투자원금 상황이 예상됩니다”, “투자자 원금을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원금 상황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음



#### 판·단·내·용

-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법은 증권사 직원이 선박펀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했더라도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정확한 설명을 했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서울고법은 투자자료와 설명서에 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 1심에서 지적한 “원금 상황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예상 정보나 계획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가정과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각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원금회수가 당연하게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같은 표현이 원금회수를 보장하는 거짓이나 왜곡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1

[부산지법 2011. 3. 23 선고 2010가합791]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만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내수공업자인 투자자 A는 재개발 토지보상금 등 4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판매회사인 금융회사 직원 B의 권유로 파생상품펀드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가족명의로 6개의 계좌에 총 14억 9천여만원을 투자함
- 첫 해에는 14.5%에 달하는 2억 1천여만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등 수익률이 좋았으나, 2007년 11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해 75.5%의 손해를 봄. 첫째 지급받은 배당금을 감안하면 원금의 61%(약 9억 1천만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음
- 투자자 A는 이 펀드 매입전까지는 집합투자상품을 매입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면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함
- 그런데 이 펀드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임에도 금융회사 직원 B는 펀드의 상품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주가가 4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펀드는 삼성전자 등 국내외의 5개 우량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하면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말함
- 한편, 금융투자회사 직원 B는 2008년 1월 주식이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상황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A 등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도 환매 등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 판·단·내·용

- 금융회사는 투자자 A 등에게 총 3억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 매수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을 포함해 수익증권 특성,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 금융회사 직원 B는 투자자 A 등에게 펀드투자를 권유하면서,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만 강조하고 그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행위인 만큼 금융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투자자들도 투자상품의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하는데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금융회사 직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집합투자상품 고객투자 확인서’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말에 의지해 투자한 잘못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35%로 제한함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2

[대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상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투자설명서에 위반 또는 선관주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사·건·개·요

- 자산운용사 A는 (구) 간투법상의 위탁회사로 파생상품 투자신탁상품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 동 펀드는 신탁재산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BNP Paribas로 기재하고도 Lehman Brothers Asia로 변경하여 거래하였음
- 원고들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로서 자산운용사 A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을 원고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투자설명서에서 거래상대방을 정한 부분은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자산운용사 A는 이에 따라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자산운용회사의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판·단·내·용

- 거래상대방은 펀드자금이 조성된 후에 자산운용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섭을 거쳐 확정하게 되므로 신탁단계에서는 이를 미리 확정하기 힘들고 신탁약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 제반사정을 들어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기재한 부분이 당연히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 자산운용사 A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당시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설명서 위반 또는 선관주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함
-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인 경우에 신탁약관의 내용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짐
- 다만, 그 기재내용이 개별약정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자산운용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빚나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3

[서울고법 2013. 10. 16 선고 2013나105927]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시 투자자도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파악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10년 8월 B 금융회사를 통해 C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딸을 대리하여 3억 2천여만원을, 고모인 D 명의로 1천여만원을 각각 투자함
- 그러나 2011년 C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을 받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자, B 금융회사가 회사채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B 금융회사가 원고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회사채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 구조, 성격 등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인 C 기업의 지급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원고들이 회사채 상품구조 및 손실 발생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B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힘
- 그러나 통상 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도가 투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과 직결되므로, 투자자 본인도 B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설명의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 등 기업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함에도 투자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함
- 투자를 주도한 원고 중 1인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 회사채에 투자한 점,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지 않아 위험이 늘어나게 된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B 금융회사는 원고들에게 합계 1억 2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함
- 1심은 B 금융회사의 책임을 60%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절반으로 낮춰 투자자의 잘못을 1심보다 높게 봄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15996]

선박펀드 대상인 선박업체의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 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례



사·건·개·요

- A증권회사와 B자산운용사 선박회사인 C사와 D사간 서로 맺은 정기용선(배를 빌림) 계약의 용선료 채권과 선박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출시후 판매
-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고객은 투자금 손실을 보고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바 용선료, 용선기간 등을 제대로 체크 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임
- 판매회사는 진실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투자에 관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역시 투자자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A증권회사는 동 펀드를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비록 판매회사이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판매사와 운용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사례 25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변동금리 방식의 외화대출 금리가 국내외 통용되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경우 기준금리의 결정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은 2006년 5월 엔화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금리정책 방식은 (1)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 + (2) 가산금리 방식이었음
- 처음의 적용 금리는 1.85%였으나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2009년 11월에는 11.65%로 치솟음
- 이에 고객은 금융회사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 판·단·내·용

- 금융회사는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1) 이자율의 범위, (2) 산정방법, (3)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해 설명해야 함
-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설명시에 대출금리가 국제금융시장,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나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따라서 엔화대출의 주요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5. 주문 관련 분쟁

### 1 주문 관련 분쟁이란?

❖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써 주식,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위탁 매매를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며 고객의 주문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관련 분쟁이란, 이러한 주문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주문 의사와 다르게 주문이 체결되었거나 아예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문 관련 분쟁은 학술적인 의미에서 정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책자에서는 반대매매 관련 주문, 주문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주문도 주문 관련 분쟁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 2 주문 관련 분쟁의 기본 법리

#### ❖ 주문처리 오류

여기에서의 주문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주문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매의건의 표명은 진정한 주문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종목, 수량, 가격, 주문유형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주문입력 실수 등의 이유로 고객의 주문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매매 거래한 경우에는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반대매매

주식의 경우, 미수거래 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신용거래 시 에 채무상환 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추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SPI200선물·옵션, 미국달러선물·옵션 등의 국내 장내파생상품거래나 NIKKEI225선물·옵션, Crude-Oil선물·옵션 등과 같은 해외선물거래 시 위탁증거금의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내려가 마진콜 (Margin Call) 요구를 받았음에도 추가증거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자적 지위에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반대매매 실행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 사전 통지의무

일선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대매매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주된 사유는 반대매매사실에 대한 고객 통지 여부입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용거래 또는 선물·옵션거래에서 상환시한 내에 상환 또는 추가 예약 요구를 할 것을 전제로 금융투자회사의 임의상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대매매전 사전 통지의무는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미수거래에 있어서는 증권회사가 미수금 발생예방을 위해 '미수금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미수금 발생 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전통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의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매 시 발생한 매수대금부족분을 즉시 인지할 수 있고, 부족한 매매대금은 매수종목의 향후 추가변동상황과 무관하게 확정적이며, 매수 후 짧은 기간내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결제요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통지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반대매매 종목 선정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매매가 비록 채권자적 지위에서 실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권회사 등은 여전히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보유하고 있어서 반대매매된 종목 및 수량의 적절성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증권회사별로 반대매매 종목 선정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통상적으로 당해 미수발생 증권이 가장 선순위 반대매매 종목으로 선정되며, 이후에는 최근 매수 종목, 종목코드 번호 선(후)순위, 종목명 가나다순 등 증권회사별로 정하고 있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종목이 선정됩니다.

반대매매 대상종목의 선정은 결과적으로 반대매매 당일의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상황에 따라 고객의 손익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증권회사라 할지라도 주가의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정해놓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매도종목을 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반대매매되는 주식의 수량산정은 반대매매종목의 당일 시장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반대매매 사례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용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500원	8,500,000원	142%	
D+1일	8,300원	8,300,000원	138%	추가담보 납부요구
D+2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 (30만원 담보부족)
D+3일	임의처분 실행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가정시, 195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주)이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만원(195주×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만원)의 4.6배 수준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의 계산보다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담보부족 발생 시 많게는 부족금액의 10배이상 또는 신용주식 전량이 반대매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대매매주문은 시장가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대매매일 시세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올바른 반대매매 대처요령

투자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될 경우에도 투자자는 자신의 보유종목 중 반대매매 되는 종목을 지정하여 우선 반대매매 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종목별 손실을 및 향후 상승여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 반대매매 종목을 자신이 직접 선정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대매매종목의 선정은 증권회사의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고객이 반대매매 종목을 변경하거나 반대매매 직전 추가입금 등을 통해 반대매매를 막고자 한다면, 증권회사에서는 수작업을 통해 반대매매 대상계좌 또는 종목을 수정하는 등 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거래하고 계신 증권회사에 반대매매 순서 지정 가능 여부 및 지정시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권회사별로 반대매매 시 교체불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매매거래정지종목, 관리종목, 감리종목, 대출종목, 신용종목 등

### 주문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주문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부여한 대리권을 근거로 대리인이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므로, 만일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리권 수여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계좌명의인으로 부터만 매매거래를 위한 위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 ① 계좌개설 시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②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③ 일임계약에 의하여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금융기관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차명계좌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계좌명의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차명거래자 몰래 현금을 인출하거나 매매거래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업현장에서 주문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주문행위가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계좌명의인이 아닌 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로부터의 매매거래 위탁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계좌에 대해 자가 주문을 낸 경우, 이러한 주문을 처리하여 가족의 손실을 발생시킨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 대해 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데,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가 일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좌명의인이 아닌 자의 주문이었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父가 자의 주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하였거나 자에게 주문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판단 끝에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리상으로는 본인의 계좌가 아님에도 주문을 낸 자에 대해 증권회사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속적인 법률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 매매주문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매매주문 관련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주문 불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매도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가 가능하여 주문을 냈음에도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도주문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과 매도주문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던 시점에서의 시가로 매도되었을 때의 매도대금과의 차이가 손해배상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도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당초 매도주문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

- 매도주문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매도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

만일, 상기와 같은 경우에 고객이 매도주문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해 주식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던 중에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 등이 주가하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고객의 인지시점 이후의 추가적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매매주문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고객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에 주의하면서 신용 거래를 하세요

- 신용거래는 보유(또는 매수할) 주식 등을 담보로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큰 수익이 가능하나 주가가 하락하거나 단기 급등락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나 신용거래(담보대출)는 투자자의 보유주식 및 현금 등을 담보로 하므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만기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증권회사가 임의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따라서, 신용거래후 주가 하락시 보유주식(담보)의 가치하락으로 원하지 않은 시기에 강제로 보유주식이 매도될 수 있고(통상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투자원금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며 과도한 신용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한다고 증권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추가로 현금을 납입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담보비율을 상승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에 문의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 시장의 악화 등으로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손실확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보유지비율과 상관없이 증권회사가 반대매매를 해야 할 의무까지 적극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투자자 스스로 담보유지비율, 담보부족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험관리를 해야 합니다.

**Q.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신용공여의 종류는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및 예탁증권담보융자가 있습니다. 청약자금대출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거래는 상장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수자금을 대여해주는 신용거래융자와 매도할 상장주권을 대여해주는 신용거래대주로 구분됩니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큰 금액의 상장주권을 매수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금을 증권회사가 대여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고, 신용거래대주는 고객이 상장주권을 매도하고 싶으나 보유 수량이 부족할 때 증권회사가 해당 주권을 대여해주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는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를 말합니다.

**Q. 미수동결제도란 무엇인가요?**

**A.** 투자자가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주문을 위탁 받은 회원사는 일단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회원사는 미수를 발생시킨 위탁자의 매매거래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매수의 경우는 매수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전부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 :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30일간
- 매도증권을 미납한 경우 :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90일간

한편 결제일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T+2)에 결제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를 발생시킨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모든 회원사가 '미수동결'조치하고 해당 미수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증거금을 100% 청구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수발생 금액이 소액(10만원)인 경우 등은 동결계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 3 주문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매매주문 관련 사례 1

[서울남부지법 2009. 7. 23 선고 2009가단4156]

미국달러선물거래로 인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 직후에 반대매매 주문하였으나, 시장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당일에는 체결되지 못했지만 익일에 다시 주문하여 체결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06. 6. 26. 고객 B는 '08. 7. 24. 각각 C선물회사와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후 거래를 개시
- 이후, '08. 10. 6. A는 미국달러선물 매도포지션 20계약, B도 미국달러선물 매도포지션 9계약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시세 상승으로 인해 평가예탁총액의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내려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할 것을 통지받음(마진콜)
- 하지만, A와 B 모두는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인 10. 7. 정오 12시까지 증거금을 예탁하지 못하자 C선물회사는 A와 B가 보유한 미국달러선물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기 위해 반대매수 주문을 실행하였음
- 그러나, 당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장종료시점까지 상한가인 1293.80원으로 가격이 유지되어 매수주문은 남아 있었으나 매도주문 잔량이 없어 결국반대매수 주문은 모두 체결되지 못함
- 다음날인 10. 8. 장시작과 동시에 최우선매도호가인 상한가 1332.6원에 다시 반대매수 주문을 넣어 모두 체결되었음
- 그러자, 고객 A와 고객 B는 만약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인 10. 7. 반대매매가 체결되었다면 10. 8. 체결된 반대매매보다 손실금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선물회사의 과실로 인해 손실이 확대되었다면서
- 그 차액분(A : 약 39백만원, B : 약 17백만원)에 대해서는 C선물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판·단·내·용

- 舊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C선물회사가 반대매매를 위한 매수주문을 내면 족한 것이고, 만약 거래물량의 부족 등으로 당일 중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위 준칙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반대매매를 위한 매수주문을 내면 그로써 C선물회사의 의무는 다하였다 할 것임
- 즉, 반드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 직후 계약을 체결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C선물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고객A와 고객B에게 있음
- 따라서, 고객 A와 고객 B는 차액분을 포함한 전체 결제대금 부족액을 C선물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 매매주문 관련 사례 2

[대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선물계좌의 특성상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 부족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례



### 사·건·개·요

- 가정주부인 고객A는 '97. 10. 23. C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직원B를 통해 '98. 1. 7.부터 13.까지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98년 3월말 16계약의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음
- 하지만, '98. 1. 14. 동 선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98. 2. 9.에는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추가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C증권회사는 매도포지션 16계약을 환매함으로써 55백여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됨
- C증권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거래내역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하였고, '98. 1. 14.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음
- 고객A는 '98. 1. 16. C증권회사에 들러 직원B가 매도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원B가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판·단·내·용

- 舊 선물·옵션거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이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선물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 하지만,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매매주문 관련 사례 3

[대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신용용자거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용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91년경 C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해 오던 중, '96. 9월 이후 3개의 계좌를 직원B에게 관리하도록 의뢰하여 '98. 5월까지 주식거래가 이루어져옴
- 직원B는 '96. 9. 24.부터 '96. 10. 30.까지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고객A는 이를 임의매매라 주장하고, 동 매매 이후 직원B가 위 주식에 작전을 하는 종목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권유행위라 주장함
- 한편 고객A는 '97. 3. 19.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 일부를 C증권회사의 신용용자금으로 조달하였는데, 만기일까지 용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직원B는 A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만기연장을 신청하고 C증권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만기가 '98. 5. 2.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만기일까지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당 7,490으로 반대매매되었는데, 이전 만기인 '97. 8. 19. 당시의 종가는 39,800원이었음



#### 판·단·내·용

- 고객A의 임의매매 주장에 대해 평소 A와 B간의 매매종목 선정방식 및 고객A의 거래내역 확인사실, 매매 전후의 입금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부당권유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직원B가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작전하는 종목이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만으로 부당한 권유행위에 의하여 A의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 방해나 과도한 위험성 수반행위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함
- **舊 신용공여규정(현 금융투자업감독규정)상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용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익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총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다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통제하기 위한 규정임**
- 따라서,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근거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만기의 경우 그 상황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음
- 결국, 증권회사가 만기를 연장해 준 이후,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고객이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음



## 매매주문 관련 사례 4

[협회 합의권고에 당사자 수용, 제2007-10호]

직원은 계좌명의인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좌명의인의 대리권 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의 처로부터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한 결과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비록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처리한 행위라 할지라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



### 사·건·개·요

- '01. 2. 15. 고객A는 타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자신의 주식을 집근처 C증권회사로 옮겨 장기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처인 A'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이관하였음
- 하지만, 평소 A'와 거래가 있던 직원B는 남편A의 계좌가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을 통해 개설된 사실을 알고 A'에게 남편 보유주식을 교체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03. 8. 19.부터 관련 직원과 A'의 협의하에 A보유계좌내에서 매매가 시작됨
- 결국, 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주가가 최근 상승한 사실을 알고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자신 모르게 진행되어온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판·단·내·용

- 직원B는 고객A가 당초 계좌개설도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하였고, 매매협의 중에도 마치 남편A의 동의를 얻어 매매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이에 대해, 부부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식거래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직원B가 고객A를 잘 알지 못하여 A의 대리권 수여의사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자인 점, 전화통화 등으로 쉽게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다만, 신청인의 투자경험 및 관리소홀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실상계함)하였으며, 또한 계좌개설 행위의 대리권이 매매거래 대리까지 가능한 것은 아님.
- ※ 하지만, 고객A의 처인 A'도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또는 직원B가 남편A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증권회사 또는 직원B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결국, 분쟁조정에서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재조정한 금액으로 당사자간 최종합의가 성사됨



### 매매주문 관련 사례 5

[대판 2010. 1. 14 선고 2009다90184, 2009다90191]

증권사가 반대매매 예정 당일 선물옵션 추가증거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였고 고객도 HTS를 통해 이미 동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증권사에게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건·개·요

- 2007년 5월 31일, 증권사는 선물옵션계좌에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나, 고객이 HTS에 접속하여 추가증거금 발생사실을 확인함
- 다음날(반대매매 예정일 / 6. 1) 증권사 직원은 08 : 39경에 “정오까지 추가증거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반대매매 될 것”임을 고객에게 통보하였으나 동 시한까지 결제가 되지 않자 반대매매를 실행(6. 4)



#### 판·단·내·용

- 원 심 -

- 2007년 5월 31일, 고객은 인터넷상으로 추가증거금 발생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권사 직원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증거금의 발생 및 반대매매 예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 고객은 반대매매 예정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판단컨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미결제액의 손실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함

- 항 소 심 -

-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고객이 어떠한 경우(HTS조회 등)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를 알게 된 경우 비록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증권사 직원이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전 고객에게 전화하여 추가증거금 발생사실과 미결제 시 반대매매가 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설령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이미 HTS에 접속하여 추가 증거금 발생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 증권사가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매매주문 관련 사례 6

[대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파생상품 거래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주문실수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의사 표시의 착오에 대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증권사는 자기회사 직원들의 실수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정정 신청을 했고 A증권사의 보험회사인 B 보험사는 A증권사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50억원을 지급함. A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를 0.8원에 매수 해달라고 위탁받았지만 A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고, C증권사는 0.8원 상당의 선물을 100배 높은 80 원에 매도해 78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음
- A증권사는 B증권사가 실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거래의 취소를 주장함



### 판·단·내·용

- A증권사, B보험사가 C증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1심 및 2심은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C증권사는 A증권사에 23억원, B보험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9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매매주문 관련 사례 7

[의정부지법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금융회사가 대출의 담보로 잡은 주식을 고객의 동의없이 반대매매해 담보가치를 유지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2007년 2월 B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투자자 A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동의 없이 B 금융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팔아 대출 원리금에 총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
- 2007년 3월 투자자 A의 담보비율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자 B 금융회사는 투자자 A의 주식 중 일부를 정리했고 이에 투자자 A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질계약\*에 의해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함
- \*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써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케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 유질계약을 금지 (민법 339조), 다만 상법 59조에 의해 상행위에 대해 유질계약을 허용



판·단·내·용

-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기 전에 질권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의 유질계약 금지규정은 금융회사가 당사자인 상행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없이 담보물을 팔아 입은 손해 1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법원은 질권 설정자(투자자 A)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질권자(B 금융회사)에게는 상행위가 되는 경우 유질계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 상인인 B 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는 것은 상행위에 속하므로 B 금융회사가 투자자 A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상행위에 유질계약을 허용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주식을 임의처분하는 반대매매는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춰 담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사전통지를 받기만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대매매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 시기와 방법 등을 금융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함



## 6. 기타 분쟁사례

### 1. 횡령사건

#### ❖ 횡령에 따른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

형법 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5)입니다.

본 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횡령으로 인한 처벌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횡령행위 발생 시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위탁계약을 통해 고객의 자금을 보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횡령행위가 발생하면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배상책임은 앞서 살펴본 민법 상 사용자책임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임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행위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사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묻지 못하고 당해 임직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가 그러한 예입니다.



- 주점에서 친교모임 중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명의로 아닌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투자자도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았으며 투자사항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 2 횡령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횡령 사례 1

[대판 2009. 8. 20 선고 2007가단4159]

투자자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점 내 특정공간에 설치한 HTS 룸에 지속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를 동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오인하여 주식거래를 일임했다면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 사·건·개·요

- '06. 3. 3. 고객A는 C증권회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B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B는 ○○지점에 설치된 HTS룸을 혼자서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자신을 C증권회사 직원으로 사칭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A는 C증권회사 직원으로 오인한 B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면서 '매달 투자원금의 20%까지 수익을 올리고, 20%가 넘는 부분은 B가 수취하기로 약정함
- 이때,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 B가 마치 C증권회사의 직원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만드는데 기여한 과실이 있는 바, 이는 C증권회사가 사용자로서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B의 사기행각을 방조한데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따라서, A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B와 같이 C증권회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 A가 ○○지점을 이용하는데 있어 B를 C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및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고객보호의무도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판·단·내·용

- HTS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고객 A가 지인의 소개로 B를 만났을 당시에는 B가 사실상 혼자 이용하다시피하여 B를 동사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었지만,
- 당시 위 공간에는 'HTS룸'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C증권사의 다른 직원들은 직위와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했으나 B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B가 A에게 교부한 수익배분약정서에도 B 자신의 명의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C증권회사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없었음. 또한, 당시 A는 B를 △△△사장으로 호칭하여 왔음
- 위 사실과 함께, 약정서 내용에도 '수익의 20%를 넘는 부분은 B가 가져간다' 라는 특약은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증권회사의 직원과 고객이 약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A는 당시 타 증권회사에서도 주식거래를 해오는 등 주식투자경험이 없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 C증권회사가 A로 하여금 B를 동사의 직원으로 오인하게끔 외관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증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음
- 아울러, A는 C증권회사와 관계가 없는 B와의 매매일임 약정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것인바, A가 단지 C증권회사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실만으로 C증권회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횡령 사례 2

[서울고법 2009. 9. 9 선고 2008나113761]

증권회사 직원이 법인고객 자금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법인고객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 증권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법인고객인 A는 도시가스소매업체로서 소비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매달 15일 이전에 요금을 수금하였고 도시가스도매업체인 ◎◎공사에게는 매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요금수취 시점과 대금지급 시점 간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로 하고 B증권의 MMF(Money Market Fund)계좌를 이용하였음.
- 운용방법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취한 요금은 즉시 MMF계좌에 예치해 놓았다가, ◎◎공사에 도매대금 지급 시에 MMF계좌에서 A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일괄 이체한 후 출금·지급하여 왔는데, 이때 법인고객 A는 자금담당과장 甲이, B증권은 직원 乙이 각각 동 업무를 담당하였음
- 그러던 중, 甲은 乙에게 MMF계좌에서 당초 지정한 △△은행의 계좌가 아닌 이전에 법인 A가 △△은행에서 개설해 두었던 휴먼계좌 등으로 자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자 乙은 이에 응해 주었음
- 또한, 甲은 법인A의 기업어음(약속어음) 용지를 수차례 절취, 위조하여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의 자금을 모아 주식, 선물거래는 물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먼저 위조한 기업어음의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함 (甲은 어음위조행위로 징역 6년형 확정판결)
- 이러한 범죄행각이 진행되면서 甲은 발각을 우려하여 B증권 직원 乙에게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작성,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 잔고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교부 받았으며, 법인 A의 다른 직원들이 MMF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乙은 甲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일부 누락시켜 거래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있음 (乙은 잔고증명서 위조로 5백만원 벌금형 확정판결)
- 이후, 법인 A는 甲이 위조한 기업어음을 할인받아 손해를 끼친 ◇◇은행으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일부 패소하여 약 100억원을 배상함
- 이에 대해서, 법인 A는 B증권의 직원 乙의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 허위작성 및 교부 행위로 인해 甲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법인 A로 하여금 甲의 범죄사실 발견도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은행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 B증권이 직원 乙을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 판·단·내·용

- B증권은 법인고객 A가 MMF계좌 개설당시 출금계좌를 지정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고객 A의 소속직원 甲은 B증권의 직원 乙이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및 교부할 당시에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인고객 A도 乙이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알거나 알지 못한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B증권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A와 B는 MMF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A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일괄 이체하기로 합의하고 그 통장사본을 乙에게 송부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도 乙은 甲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甲이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마저도 응해 준 사실이 있는데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甲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상급자나 법인 고객 A의 상급책임자들에게 보고하거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甲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법인고객 A가 甲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는데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A가 입은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B증권의 사용자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의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4다43886)”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 비록, 법인고객 A의 자금담당직원 甲이 비록 MMF를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직급은 과장에 불과하여 회사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甲이 乙의 불법행위를 인식한 것이 곧바로 사용자인 법인고객 A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아는데 증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B증권이 乙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다만, 법인고객A는 MMF계좌를 甲에게 전담시키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이로 인해 甲이 어음을 위조한 점, 기업어음 분실사건 발생초기에 제권판결을 청구 하였음에도 甲을 포함한 자금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B증권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횡령 사례 3

[서울고법 2010. 1. 21 선고 2009나60086]

직원이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투자자금을 입금 받은 후 약속과 달리 KOSPI200 선물·옵션에 투자한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례



#### 사·건·개·요

- 직원 B는 금융관련업종 근무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2004. 12월경부터 △△증권에서 법인투신본부 본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음
- 직원 B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이전 직장동료(금융관련업종 근무)이던 허모씨, 최모씨, 정모씨, 장모씨 등 4 명에게 ELS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마련한 은행계좌로 각각 약 11억원, 약 17억원, 약 4.2억원, 약 3.8억원을 입금하도록 함
- 같은 기간에 직원 B는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이 유상증자한 후 발생한 실권주에 자신의 명의로 청약하여 배정 받은 주식을 자신이 퇴직할 시점에 매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최모씨 1.8억원, 허모씨 약 7.7억원, 정모씨 약 4억원, 천모씨 6.3억원, 배모씨 약 6억원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마련한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하도록 함
- 그러나, 직원 B는 이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입금 받은 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선물·옵션매매에 사용하여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킴. 이후, 직원 B는 허모씨 4.2억원, 최모씨 약 8.2억원, 정모씨에게는 약 2.8억원씩을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
- 위 사항들에 대하여, 직원 B는 자신의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을 인정함
- 그러나, 위의 피해자들은 직원 B와 더불어 직원 B가 근무한 △△증권에게도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음



#### 판·단·내·용

- ELS 등에 투자한다면서 유치한 자금을 횡령한 사안에 대하여 △△증권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되는 살펴보면,
  - 직원 B는 동 사의 법인투신본부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ELS 또는 ELF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중개,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투자자들에게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할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금 유치는 직원 B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증권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봄이 상당함
- 그러나, 직원 B가 △△증권의 직원으로서 유상증자 시 배정받을 실권주에 대하여 위 투자자들이 자금을 B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직원 B와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고, 직원 B가 △△증권에서의 직무권한 및 직무수행방법을 현저히 이탈한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를 외형상 △△증권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증권의 사용자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허모씨, 최모씨, 정모씨는 직원 B와 이전 직장동료로서 금융관련업종에 근무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ELS 등 가입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한 과실을 인정하여 이들 3명에 대해서 과실상계비율 50%를 적용하고, 이런 배경이 없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40%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함



형령 사례 4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나22968]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후 사기를 당했으나 그 동안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다면 자산운용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인 원고 A 등은 B 자산운용사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C를 알게 되어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 2천만원을 펀드매니저 C의 개인계좌로 입금
- 펀드매니저 C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펀드매니저 C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에 투자자 A 등은 B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돌려받지 못한 8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3월 소송을 냄
- 1심은 펀드매니저 C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B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원고 A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 등이 위조한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움으로 B 자산운용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판·단·내·용

- 자산운용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며, 투자자인 원고 A 등이 통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C 개인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 이 사건 편취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 A 등이 펀드 운용결과와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B 자산운용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



### 3 전산장애

#### ❖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란?

고객이 HTS(Home Trading System), WTS(Web Trading System) 등을 통해 매매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의 주문이 체결되지 않거나, 잘못 체결됨에 따라 고객이 예상 밖에 손해를 입어 촉발된 분쟁을 의미합니다.



#### ❖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특성

##### ◎원인파악이 어렵습니다.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전산장애는 금융투자회사의 서버 또는 프로그램 오류와 같이 금융투자회사 내부적 전산시스템 결함과 관련이 있는 전산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장애 시 발생하는 현상은 투자자 컴퓨터상의 장애(성능 미달 또는 시스템 결함)나 인터넷 선로상의 장애,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의 지연현상이 발생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 등이 서로 유사하므로 실제 어느 단계에서의 문제로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객의 매매의사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

만일, 금융투자회사의 전산장애로 원인이 판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고객이 당초 매매의사가 있었는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 주문 로그인(Log-In)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본인의 매매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객의 매매의사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시의 호가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체결이 가능한 주문이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 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그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결국, 장애 종료 후에 동일 종목에 대한 매매의 계속된 의사가 존재하여 매매한 결과 당초 전산장애 당시 매매가 체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주문이 체결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주식을 전매도?환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어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주식이 가격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기회비용 내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됩니다.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 ❖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전산장애로 인해 체결되지 못한 주문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과 전산장애 복구 이후 실제 매매하기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의 차이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산장애 복구 이후 매매가 지연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투자회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 최근 이러한 전산장애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산장애 발생 시 비상주문수단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메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393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민사 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 빌린 물건의 시가는 통상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특별손해는 채권자(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데, 민법은 이러한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4 전산장애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전산장애 사례 1

[협회 분조위 회부전 종결 2009. 10. 26, 제2009-26호]

고객이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실현을 하려고 했지만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해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매도의사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배상이 부정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 A는 '08년 9월경 B증권 ○○지점을 통하여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HTS(Home Trading System) 설치하였고, 이때 '전자증권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회사 본사 고객지원센터, 영업부 또는 지역 영업점에 전화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 '09. 8. 31. 09:00~09:33 B증권의 전산매매시스템과 연결되는 인터넷통신망에 할당된 IP가 서로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함
- 이때, 고객 A는 07:20~09:04까지 HTS에 접속되어 있었고 09:13~09:16까지는 ○○지점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보유 중이던 ☆☆종목에 대한 시세를 문의하였으나 실제 매도를 주문한 사실은 없음
- 09:33 전산장애가 복구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고객 A의 ☆☆종목에 대한 매도주문 기록은 없었음
- 이후, 고객 A는 보유 중이던 ☆☆종목 2,100주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려 했지만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해 매도가 불가능했고, 전산장애 복구 이후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함



#### 판·단·내·용

- 고객 A는 HTS 서비스 신청 당시부터 B증권이 제공하는 전산장애발생 시 대체주문방식(전화주문 가능 및 HTS 수수료율 적용)에 대하여 이미 인지함
- 또한, 평소 거래하던 영업점에 3차례 전화하여 시세를 확인하였고 이때, 대체주문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주문한 사실이 없는데, 고객 A의 매도의사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B증권의 전산장애 발생사실과 고객 A가 주장하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 아울러,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실현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기대한 수익을 '특별손해'라고 일컫는데, 증권회사 측에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산장애 사례 2

[서울고법 1999. 12. 3. 선고 98나51680]

고객이 콜옵션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매수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A는 '97. 8. 21. C증권회사에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B를 통해 콜옵션 47.5종목을 0.60포인트로 170계약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하지만, B증권회사의 선물·옵션 위탁계좌관리 전산시스템에 일시적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콜옵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판·단·내·용

- B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일시적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일시적 전산장애의 발생이 B증권회사의 업무 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만일, B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용 소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가지수옵션거래는 투자성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콜옵션 종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원고가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동일취지 조정례

- 전산장애 시 매수·매도주문의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체결될 수 있었던 매수·매도 호가임에도 전산장애로 인하여 동 주문이 증권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되지 못해 결국 전산장애가 종료한 후 다시 동종의 종목을 매수·매도하는데 지출된 추가적 비용이라고 할 것임
- 결국 전산장애 상태에서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주문이 체결가능한 호가이어야 하며, 장애 종료 후에 동일종목의 매도나 매수의 계속된 의사로 매도·매수주문을 하여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됨으로써 고객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였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동 주식을 전매도·환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득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어도 실제로 동 종목을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매수·매도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기회비용 내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임 (금감원 금융분조위 2003.10.7 결정 제2001-48호)



## 전산장애 사례 3

[대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선물·옵션거래에서 주문 가능금액이 부족함에도 전산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거래가 체결 된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인지하고도 다수의 거래를 주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사·건·개·요

- A 증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원고 B는 퇴직 후 A 증권사의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는데,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를 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거래를 함
- A 증권사는 원고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으로 충당, 이에 원고 B는 2012년 3월 투자액 6,600여만원과 A 증권사가 청산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함
- 2심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거래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처리되었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되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원고가 주문 조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실행한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A 증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600여만원 지급을 결정함

※(구)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단·내·용

- A 증권사가 운영하는 HTS에 주문가능금액의 부족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여야 할 주문이 접수되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가 옵션거래를 한 사안에서, 그러한 거래의 처리는 (구)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 대법은 (구)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한 것으로,
- 원고 B가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옵션주문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심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HTS가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매도 주문을 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대로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A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5 금융사기

## (1) 유사수신행위의 폐해

## ✚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사수신행위이면서도 합법적인 업체를 가장하는 등 그 행위가 지능화 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사업 등에 대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일반인들이 외형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 유사수신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회사의 실질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상담을 요청하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설명받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연금형태의 수익보장을 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발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 또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사실 등을 정부 등록법인으로 광고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일간지 광고자료 등을 언급하며 대외적 공신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임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벤처산업,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 ✚ 유사수신행위의 신고방법

-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접하게 되거나 당해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전화 : 1332)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주요유형

유형	세부 방법 예시
FX마진거래, 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으로 투자자모집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고, FX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라고 하며, 동시에 5천달러를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18개월 동안 주고, 1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6%, 2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7%, 3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8%의 수익을 주고, 17개월째에 원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18개월째에도 원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 모집	지인이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하다 비트코인 헤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십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0~14주간 매주 수당을 지급하며 단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수당이 계속 들어오고 일정금액이 모이면 주식을 분할해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라고 투자를 유인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자 모집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의 형태로 이루어진 O코인이라고 하면서, 환금성과 넓은 사용성(영화관과 카페,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의 장점만을 가진 공신력 있는 코인에 해당한다고 선전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투자자 모집	돼지육가공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으로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돼지(3개월짜리) 1마리를 사육하여 판매할 때 수익이 남게 되므로 매월 확정이자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 준다고 선전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하여 투자자 모집	'12년부터 독자적인 페이스북을 개발해, 광고권을 구매하면 수년내 역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예금, 적금형 금융상품처럼 선전하여 투자자 모집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하여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
원금보장 계약서·공증서를 허위 발행하여 투자자 모집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기업체로서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원금보장의 계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안심시키고, 특히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글로벌 외국기업 등의 지급보증을 사칭하여 투자자 모집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 D뱅크가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며 1구좌(1만불)를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128%)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 기업 OO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음

## (2)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 일정부분만을 발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회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의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에 있어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릅니다.

- ① 진입요건 : 투자자문회사·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② 영업의 방법 :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합니다.
- ③ 감독 및 검사 :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 투자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투자주의회사 목록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등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금융회사 길라잡이-제도권 금융회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주요 유형

유형	세부 방법 예시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p>(소액증거금을 미끼로 투자유인) ○○업체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50만원의 소액증거금으로도 선물·옵션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동 회원들을 대상으로 ○○업체 명의의 증권계좌 대여 및 HTS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p> <p>(고액대출을 미끼로 투자유인) △△업체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p> <p>(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해 주겠다고 투자유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알선업체를 통해 우량한 투자중개업체라며 ◇◇업체를 소개 받았는데, 실제 호가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확인해 보니 투자중개업체를 가장한 도박형 미니선물업체였음</p>
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p>(수익 보장을 가장한 입회비 편취) ▽▽업체는 인터넷 카페에서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유료회원방(입회비 60만원)에 가입하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 영업</p>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영업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p>(손실보전 가장) 인터넷 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투자전문가의 지시에 의해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수익발생시 투자자와 투자전문가가 7:3으로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 이후 업체가 단속되었다면서 원금업체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p>



### (3) 피싱사기 관련 예방 안내

#### ◎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를 말하며, 크게 보이스피싱, 파밍 등으로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피싱사기로 주로 전화로 낚치·보험료·통화요금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개인정보(보안카드번호, 계좌정보 등)를 입력하면 범죄자가 이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입니다.

#### ◎ 피싱사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 되었으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향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 계좌 등에 송금·이체 등을 했다면 경찰청(전화: 112), 금감원(전화: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보안카드 재발급,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진행하는 「피해금 환급절차 신청」 등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감원(전화: 1332)으로 문의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 ① 보이스피싱 피해자 ➡ 경찰청 112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② 경찰청 ➡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연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 이용),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
-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 ④ 금융회사 ➡ 금감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⑤ 금감원 ➡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 ⑥ 금융회사 ➡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피해자 계좌에 입금)

\*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된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3개월 정도 소요)



◎ 피싱사기의 주요유형

방 법	세부 사기수법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번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 하는 수법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 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 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 자명의로 카드를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사, 금융권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 유도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 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 하여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 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번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 II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방 법	세부 사기수법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 (4) 대포통장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대포통장의 양도·매매는 위법행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통장명의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카드)을 넘기거나 팔면 안 됩니다.

대출·취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마련을 위한 사기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타인에 대한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책임 등

- ① 형사처벌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 ② 민사책임 : 통장(카드)을 양도하여 동 통장(카드)이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명의인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됨 (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59103)
- ③ 금융거래 제한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다른 모든 계좌의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타인에게 통장(카드)을 양도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또한 내가 양도한 계좌가 피싱사기에 이용된 경우에는 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다른 계좌들 까지도 비대면 인출거래(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인출거래)가 모두 제한됩니다.

이미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전화 : 112)하세요.

※ 대포폰 개설여부 조회

대포폰은 명의자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사이트(www.msafet.or.kr)에서 대포폰 개설여부를 조회(명의도용 사전차단 서비스도 제공)



**불법 대포통장 모집광고 및 피해 주요 사례**

-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더니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음
-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까지 편취
-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 사례
-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광고 사례

## 6 금융사기 관련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 금융사기 관련 사례 1

[대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융투자회사와 달리 고객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라는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 사·건·개·요

- A 회사(피고 1)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B 증권투자 전문가(피고 2)는 동 사이트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A 회사로부터 고객들이 지급한 가입료 중 50%를 배분 받음
- 원고들은 2009년 위 사이트의 B 증권투자 전문가(피고 2)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유료회원이 되어 월 80만원 상당의 가입료를 지급하고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받음
-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투자자문업 등록없이 회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험성이 높은 ELW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문계약 내지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단·내·용

- 자본시장법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해 규정한 금융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함(제8조 제1항)
-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그리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 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함



## 금융사기 관련 사례 2

[대판 2015. 7. 9 선고 2013다13849]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없는 허위정보로 보도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을 제공하는 B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 받음
-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B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B사는 '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C전자의 주식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D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냄
- 투자자 A는 이를 믿고 C전자 주식 16만 8,000여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되어 3억 9천여만원을 손해를 보았고 이에 투자자 A는 B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심(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보호 의무도 없으며 원고 패소 판결함



### 판·단·내·용

- 대법원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동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 9,000여만원을 잃었다며 A사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4억 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함
- B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C전자가 D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힘



### 금융사기 관련 사례 3

[서울서부지법 2012. 3. 27 선고 2011가단59103]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통장(대포통장)을 빌려준 통장의 주인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 사·건·개·요

-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주인 피고인 A등 7명은 2011년 8월 익명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들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익명인에게 양도함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 B는 2011년 9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거래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 검찰청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함
- 익명인은 같은 날 피해자인 원고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A등이 제공한 계좌로 4,900여만원을 송금해, 여러 차례 걸쳐 인출함
- 이에, 피해자인 원고 B는 통장주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냄



#### 판·단·내·용

- 법원은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 A등의 계좌로 입금된 4,900여만원을 통장주들이 모두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 B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잔액 91만여원과 변제금액 727만원을 제외한 손실액의 60%인 2,5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피고 A등은 익명인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넘겨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 B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솔하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B의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통장주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이로써 2015년 6월 29일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구속기소함으로써, 그 전에는 단순 사기죄로 처리해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또한 범죄 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됨



## 금융사기 관련 사례 4

[서울서부지법 2012. 3. 27 선고 2011가단59103]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Pharming)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손해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원고 A등은 2013. 1. 9.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보안등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음
- 이에 원고 A등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A등의 계좌에서 각각 1,000만원~1억원 등을 이체하여 돈이 빠져나감
- 원고 A등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금융기관 B 등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및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 위조에 해당하며,
-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전자금융거래법 (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과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한 피고 금융회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야 한다고 명문화함(2013년 5. 22 개정 동년 11월 시행)
-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손해의 80%를 부담하고 피고 금융기관의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함
- 피고인 금융기관 B는 원고 A등에게 총 1억 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 ※ 파밍(Pharming)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임



### 금융사기 관련 사례 5

[서울중앙지법 2016. 6. 15 선고 2015가단 5135685]

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되었어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기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는 2014년 9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B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금융감독원 사기 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음
- A는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그러자 화면에 「등록중」이라는 표시가 떴고 곧바로 A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음
-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화면에 등록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느냐, 계좌가 안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와중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A의 계좌에서 2100만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 전송됨(1차 출금).
- 놀란 A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엇이나”라고 묻자, 이 남성은 “전산장애이니 30분 내로 돈이 다시 들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30분 뒤 OTP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창이 다시 뜨자 A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그 순간 A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출금됨(2차 출금).
-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사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실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돈이 빠져 나갔고, B은행이 공지한 것과 달리 추가인증 절차도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 B은행은 “A의 과실로 OTP 비밀번호가 노출돼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라고 맞섬



#### 판·단·내·용

- B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인증」 공고에 따르면 ‘야간(21시~09시) 및 휴일 거래시 보안매체에 관계없이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고 발생일이 휴일이었고 이체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B은행이 공고한 추가인증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음
- A는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라’라는 B은행의 권유에 따라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홈페이지로 접속했는데 B은행은 사고 당시까지 비밀번호 30~35개 중 일부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OTP 방식은 외부노출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음
- 고객은 금융회사의 권유에 따라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홈페이지로 접속했고 금융회사는 보안카드와 달리 OTP 방식은 외부노출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도 했음
- 1차 출금은 고객 과실없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100% 인정되나 2차 출금은 공인인증서 인증과 추가인증 없이도 계좌이체가 되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금융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



## 금융사기 관련 사례 6

[대법원 2016. 2. 11 선고 2015고합603]

###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행위로 거액을 편취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사·건·개·요

- A는 F주식회사와 G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B는 H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람들에게 상품설명을 하며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
- A는 NPL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B는 상품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하면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과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형식으로 배분하고, 새롭게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옴  
\*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채권을 의미
- A와 B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납입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 오면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왔음
- 그러나 사실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은 투자 즉시 F주식회사 직원들의 투자유치금으로 소진되었고, F주식회사와 G주식회사가 보유한 근저당권부 채권인 NPL채권은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F주식회사가 투자자들의 납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도 바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A와 B 또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그럼에도 A와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에서 투자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약 900명 으로부터 총 약 600억원을 교부받음



#### 판·단·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
- 피해자가 900여명에 편취액이 약 600억원으로 매우 큰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사수신을 통한 사기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 금융사기 관련 사례 7

[서울서부지법 2017. 7. 25 선고 2016고단2959]

본인을 해외파 투자분석가라고 속여 수익원을 가로챈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 사·건·개·요

- 대학원생 A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에서 일한 투자분석가라고 소개
- 지금도 미국계 증권사에서 투자분석가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투자를 통해 200% 이상 수익을 얻었고, 아버지 주변 교수 등 지인들도 돈을 맡겨 10억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 판·단·내·용

- A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투자했다가 주식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대학원생으로 강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투자손실액을 보전하거나 부모님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 금융사기 관련 사례 8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4고합857]

양돈업체가 돼지 투자 수익보장을 내걸고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 판결하고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



### 사·건·개·요

- 양돈업체 대표 A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투자받음



### 판·단·내·용

- 대법원은 실물거래(돼지 위탁사육이나 성돈 거래)없이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한 것과 같아 유사수신행위로 봐야 한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냄(2015도 14373 등)
  - \*1,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 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를 선고
- 고등법원은 양돈업체 대표 A에게 유사수신행위(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 7 개인정보보호 관련

##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열람권 : 정보주체(투자자 등)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열람 제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부과 등 공적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등은 10일 이내 조치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제한 사유는 정정·삭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시 해당 금융기관 등은 10일 내에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 정보주체는 금융기관에 대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 조치·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개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기관)에게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요령

- **개인정보 노출 의심시 신고 요령**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privacy.kisa.or.kr](http://privacy.kisa.or.kr))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http://clean.kisa.or.kr))를 통해 신고 및 확인을 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적극 활용** :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금융거래 발생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에 유의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신청인 명의의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다만, 등록을 해제할 때까지 ATM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안 되고,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신규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은행 영업점 한군데만 신청을 하여도 전산망을 통해 다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으로 전파됩니다. 해지 시에도 동일합니다.

- **분증 분실신고를 적극 활용** : 신분증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를 통해 유해 사이트 가입, 휴대전화 무단개통 등 명의를 도용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신분증 분실 시 분실신고처

- 주민등록증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문의 1588-2188
-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dis.koroad.or.kr](http://dis.koroad.or.kr)) 문의 1577-1120

※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한 휴대전화 무단개통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사이트 ([www.msafar.or.kr](http://www.msafar.or.kr), 문의 580-0514)의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8 개인정보 관련 사례 및 판례

개인정보 관련 사례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례



사·건·개·요

- A는 1990년부터 사건 당시까지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음
- B업체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B업체는 2010. 12. 17.경 A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왔음
- A의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A소속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게재되어 있으며, B업체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었음
- A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했다며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교 홈페이지, 교수편람,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공적인 존재인 교수의 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봄
- B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B의 행위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 B가 A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A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B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B가 A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즉,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B업체의 행위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개인정보 관련 사례 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회사는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통해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토록 함
- 다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
- A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림



### 판·단·내·용

- 개인정보 이용 관련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하는 바,  
\*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식토록 권고(공정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하는 바
-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금융회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

9 기타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기타 분쟁 사례 1

[대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무자격 투자상담사(現 투자권유대행인)가 자신에게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한 고객을 속여 보유 주식을 대체출고 후 편취한 행위는 투자상담사의 업무와 외관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C증권회사 D지점장은 B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고도 채용하였고, '00. 12. 29. 고객A는 B가 투자원금보장을 하며 포괄적 일임을 요구하자 C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무자격투자상담사인 B에게 계좌관리를 맡김
- 이후 투자결과 큰 수익이 발생하자 고객A는 B를 신뢰하면서 추가입금을 하기도 하였는데, 무자격투자상담사B는 '01. 1. 20. 보유종인 ☆종목을 너무 많이 거래하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제시 될 수 있다며 이를 다른 계좌로 분산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여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고객A가 이에 동의하였음
- 결국 B는 고객A로부터 건네받은 인장을 활용하여 보유주식을 다른 계좌로 출고하였고, 이후 매도하였음에도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음



판·단·내·용

- 무자격투자상담사인 B의 불법행위는 B가 C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로 활동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포괄적인 주식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투자상담사의 업무와 주식일임 매매행위, 그리고 주식일임매매행위와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각 외관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C증권회사는 B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또한, D지점장 역시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C증권회사는 D지점장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다만, 고객A는 투자원금 보장에 현혹되어 포괄적 일임을 하고, 단기간 수익에 현혹되어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한 대체 출고를 허용하는 등 잘못이 있어 C증권회사의 책임 중 50%를 과실상계 함



## 기타 분쟁 사례 2

[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9나67865]

사모펀드의 경우에 증권회사의 설명의무가 공모펀드와 같은 수준까지는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변호사가 투자자를 대리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 사·건·개·요

- ○ 자산운용회사는 2008년 제 29회 북경올림픽을 맞이하여 역대 하계올림픽 및 북경올림픽에 사용된 마스코트, 엠블렘 등을 금, 은, 동을 사용하여 기념세트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민간투자법인 A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를 설정함
- A사는 2008. 1월 이후 북경올림픽위원회와 기념세트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국회사인 B사와 합작하여 동 사업에 진출하였는데, 만일 주문물량이 생산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A사가 일정조건으로 사업권 전체를 B사에 양도할 수 있고 이때 B사는 일정금액을 배상한다는 조건으로 특약함
- 이후, 사업여건이 악화, 변경되어 A사가 투자해야 하는 자금보다 B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자금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앞서 체결된 특약조건은 그 효력이 사문화되게 되었음.
- 이때, 김△변호사는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A사와 B사 사이의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은 물론 법률실사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해 왔음
- 이를 기회로 김△변호사는 일본에서 비즈니스스쿨 과정을 함께 참가했던 지인들과 2008. 5. 9. 모임 차에 ○ ○ 자산운용회사 및 A사 관계자를 불러 동, 사모 펀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지인들(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지인들이 동 사모펀드에 가입하게끔 도와주었음
- 이후, 동 사모펀드는 운용대상이던 금전채권에 대한 회수금액이 당초 설정 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A사의 직원들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기 때문에 손실금액은 거의 100%임



### 판·단·내·용

- 본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동 사모펀드 판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직원들이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A사와 B사 사이에서 체결된 특약사항은 2008. 4. 14 이후에는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데, 당시 김△변호사는 그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지위 내지는 업무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김△변호사는 2008. 5월 이후부터 지인들을 대리하여 동 사모펀드에 가입하도록함
- 특히, 종전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는 본 건과 같은 사모투자신탁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의 제공과 설명의무에 대해서 동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내용은 신탁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었음
- 결국, 본 건의 펀드는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펀드로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으로 투자신탁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동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에도 익숙한 변호사가 투자자를 대리한 바, 각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 기타 분쟁 사례 3

[수원지법 2011. 5. 13 선고 2010나33412]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되며, 증권사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건·개·요

- 2009년 12월, 고객A는 “투자수익을 보장(2개월에 5%)한다”는 피고 증권사의 직원B의 말만 믿고 본인 및 가족명의로 계좌에서 수익증권,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6,835만원)을 받아 직원B가 인출케 하였고, 직원B는 원고에게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약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 하지만 담당직원B는 원고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고객의 투자손실 보전에 사용하였음



#### 판·단·내·용

- 2009년 12월 고객은 피고 증권사의 담당 직원B가 제공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후 자금을 담당직원에게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 증권사 직원이 남긴 서신에 금전차입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설령 외관상 피고회사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경우, 고객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A는 B의 행위가 사무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피고 증권사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기타 분쟁 사례 4

[협회 분쟁조정사건 2012-09호]

고객은 증권사 HTS에 표기된 美나스닥선물 가격을 보고 옵션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가격이 최근 체결된 선물가격을 체결시각과 같이 표시하였기에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건·개·요

- '12. 4. 5 고객A는 △△증권사 HTS에 표기된 美나스닥선물 가격\*을 보고 풋옵션\*\*을 매매(10:14~12:39)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약 150만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A는 “△△증권사가 HTS에 당시 야간 나스닥선물 거래시간\*\*\*에 주간 나스닥선물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전일 대비 42.5pt 하락 \*\* 코스피200풋옵션 \*\*\* (한국시간) 06:45~23:15  
- △△증권사는 최근 거래된 나스닥선물 가격을 HTS에 체결시각과 같이 병기하여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음
- 이후 A는 손실 만회를 위한 거래를 지속하여 약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는데 이도 △△증권사의 상기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함



### 판·단·내·용

- 美나스닥 야간선물 개장 이후 신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선물의 최종 체결가격이 그 때까지의 시세를 반영하여 표시된 것으로 표기 상의 오류로 볼 수 없음
- 또한 옵션가격은 무위험 이자율, 기초자산 가격, 잔존만기 등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나스닥선물가격만으로 옵션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손실만회를 위해 거래하면서 추가로 지불한 수수료는 A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본 사건과는 본질적인 연관이 없음



### 기타 분쟁 사례 5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나33415]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각서를 쓴 날’로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2007년 투자자 A는 금융회사 직원 B의 권유에 따라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 펀드 등 6개 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함
- 하지만 1년도 안되어 펀드 등이 반토막나고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투자자 A는 금융회사 직원 B에게 “남아 있는 금액 전액을 환매해 달라”고 요청함
- 금융회사 직원 B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중국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며 환매를 만류했고 금융회사 직원 B의 말만 믿고 버티던 투자자 A는 2008년 11월 6일 결국 27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최종 환매함. 투자자 A는 2009년 1월 23일 금융회사 직원 B로부터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음
-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투자자 A는 ‘2013년 9월 3일’ B가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액의 60%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원심(1심)은 금융기관이 손해액의 30%인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금융기관 직원 B는 투자자 A의 돈 82억여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펀드에 투자했고 투자자 A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금융기관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투자자 A는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았는 바, 동 상품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판·단·내·용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동 건의 소멸시효가 각서를 쓴 날인 2009년 1월 23 일로부터 진행되어 동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9월에 제기되어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 투자자 A는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임
- 펀드의 최종 환매일에는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최종 환매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동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기산시점으로 봤음



## 기타 분쟁 사례 6

[대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펀드의 대량 환매청구 요청에 따른 단기간의 자산처분 강행이 수익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환매연기를 결정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사·건·개·요

-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A는 2012년 2월 7일 수탁회사인 B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를 운용, 원고인 C 생명보험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함
- 동 신탁계약상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 환매청구시에는 제3영업일)의 공고기준 가격으로 지급토록 규정함
- A가 2013년 11월 13일 국내업무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당일 15시까지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원고를 포함한 8개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 이에 A는 환매연기를 결정하고 2013년 11월 14일 펀드의 투자자산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 다음 주식시장 폐장 후 환매재개를 결정함
- A는 환매연기를 이유로 제2영업일인 2013년 11월 14일 공고 기준가격(1,000좌당 947.63원)이 아닌 2013년 11월 15일 공고 기준가격(1,000좌당 939.91원)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제1심은 환매연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제2심(원심)은 환매연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판·단·내·용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해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자원조성을 위해 집합투자자산을 단기간에 대량처분 조치가 필요함
- 집합투자자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이런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 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연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다거나 효력없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함

기타 분쟁 사례 7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43371]

펀드투자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 A와 그의 처 B는 무학으로 청과시장에서 30년 이상 야채장사를 해 온 상인으로 2007년 12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회사 직원 C의 권유로 D펀드에 5억원, E펀드에 3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자함
- 투자자 A는 펀드에 가입하면서 각 펀드의 거래신청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금융회사에 교부하였는데,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상에 인쇄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 이라는 기재는 직원 C가 했음. 또한 금융투자회사 직원 C는 펀드 가입권유 당시 위 핵심 설명서 및 팸플렛을 제시하면서 설명했으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음
- 2008년 2월 27일 펀드 평가금액이 7억 2백만원으로 하락하자 투자자 A와 B는 해당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금융회사 직원 C는 D와 E펀드 평가금액의 합이 7억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
- 투자자 A는 2008년 9월 26일 각 펀드의 환매를 신청하여 4억 9,200여만원을 상환받고 금융회사가 속여서 펀드에 가입했고 손실보장 각서도 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금융회사가 속여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함



판·단·내·용

- 금융회사가 고객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 펀드손실금 3억여원중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 금융회사가 간접투자상품에 문외한인 투자자 A에게 위험이 큰 상품을 충분한 설명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당행위임. 다만 투자자 A도 펀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그러나, 손실보장 각서를 체결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청구내용에 대해 각서는 펀드 가입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 A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임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함
-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등의 손실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임
-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약정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000다56952)



## 기타 분쟁 사례 8

[대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펀드 판매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환매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사례



### 사·건·개·요

- 투자자 A는 B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1억원을 입금함
- B 금융회사의 직원 C는 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내재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A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내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보고서를 보내어 투자자 A가 환매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토록 함
- 투자자 A의 펀드 수익률은 2007년 6월 1일경 최고 4.72%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였는데도 투자자 A는 매주 받아보는 허위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믿고 있다가 2008년 12월 26일경에 이르러 이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수익률은 -65.04%였음
- 투자자 A는 2009년 11월 19일 펀드를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B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A가 입은 손해액을 ① B 금융회사 직원의 최초보고일 이후부터 투자자 A의 허위 사실 인지일까지 사이의 최고수익률(4.72%) 시점인 2007년 6월 1일의 평가금액과 ② 허위 사실 인지일인 2008년 12월 26일의 평가금액과의 차액에서 ③ 원고의 환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즉 ①-②-③)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판·단·내·용

- 대법은 원심 ①의 금액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환매를 청구하였을 시기를 기초로 하고, 이를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시작된 이후 비교적 환매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기초로 하며, 그 시점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수익률이 형성된 시점을 기초로 하되, 제반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③의 금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함
- 또한 동 사건의 펀드약관은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매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환매대금은 원심처럼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파기 환송함
- 파기 환송심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① 실제 수익률과 다르게 보고한 최초보고일인 2007년 6월 29일 이후부터 투자자 A의 허위사실 인지일인 2008년 12월 26일까지 기간동안 최고 수익률(-3.92%)이 형성된 2007년 7월 4일부터 제3영업일의 평가금액과 ② 허위 사실 인지일인 2008년 12월 26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평가금액의 차액 (즉 ①-②)으로 인정하고 B 금융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데,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 기타 분쟁 사례 9

[대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주식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회계법인이 부당하게 기업가치를 부풀린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 금융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2000년 1월경 유상증자시 실권주 공모를 하였고, B 회계법인은 당시의 주시가치를 평가함
- A 금융회사는 계속된 적자와 C 회사채 관련 손실부담으로 인해 주식의 본질가치가 (-)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실권주 공모가격을 6천원으로 미리 확정하여 공모를 실시하였고, 공모시 안내문 등에 2001년 4월중 코스닥 등록예정, 외화유치협상 완료라고 근거 없이 기재하고 설명함
- B 회계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반해 C 회사채 관련 예상손실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향후 경상이익 추정과정에서 투자신탁보수 및 지분법 평가이익을 과다 반영하여 주시가치를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하였음
- 그 후 A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금 감소명령을 받아 발행주식을 전액 무상 소각함
- 이에 실권주 공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소수주주들이 A금융회사의 투자권유와 B 회계법인의 주시평가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은 A 금융회사가 원고측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고 손해액의 30%까지는 A 금융회사와 B 회계법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크며 A 금융회사의 책임범위는 40%, B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10%로 제한함



#### 판·단·내·용

- A 금융회사 40%, B 회계법인 10%의 배상책임을 지운 원심(2심)을 확정함
- A 금융회사는 본사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회계법인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3,937원의 주당가치에 더해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감안해 실권주 공모가격을 6천원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 실권주 공모를 위한 청약안내문 등에 코스닥 등록시 가격과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외화유치계획을 외화유치협상이 완료되고 미발표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설명한 것은 부당한 투자권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B 회계법인도 정부가 A 금융회사의 손실부담을 3,643억원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수탁고가 많이 증가한 과거 6개월만의 기록을 자료로 삼아 실적 추정에 사용하여, 주당 본질가치가 -2,441원에 불과함에도 3,937원으로 과다 산정한 것은 주식공모절차의 신뢰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기타 분쟁 사례 10

[대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ELS 발행회사가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라는 사례



### 사·건·개·요

- 원고 A 등은 2005년 3월 16일 B증권사의 '공모 ELS C주식회사 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만원~1억 5천만원씩 총 2억 1,900만원을 투자함
- 동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가격이 기준가격(108,500원)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 종료 10분전만 해도 108,500원 이상이었던 C주식회사의 주가는 B증권사가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델타헤지(delta hedge)'를 시도하면서 10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됨.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원고 A 등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2심은 증권사의 매도는 정당한 거래행위로 보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법이며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C주식회사 보통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와 이익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함



### 판·단·내·용

- 수년간 진행되었던 다수의 ELS 상환기종일 주식 대량매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초 판단으로, 증권사가 ELS 상환 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델타헤지는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적절한 수량으로 보유하면서 손익을 상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을 상환자금으로 마련하는 기법임.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운용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부정거래로 볼 수 없지만 ELS 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델타헤지를 핑계로 주식수량과 주가를 조정해 악용할 가능성이 대두됨
- 특히 피고 증권회사는 보유한 C주식회사 보통주 상당량을 장 전반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함으로써 증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장 종료 무렵에 대량으로 기준가격 이하의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ELS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임
- 대법원은 B증권사가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인 C주식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가를 하락시킨 것은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를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므로 B증권사는 투자자들이 본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토록 함
- 또한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증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기타 분쟁 사례 11

[대판 2015. 4. 9 선고 2013마1052]

추가연계증권(ELS) 상환기준일 증가 형성에 영향을 준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대법원의 증권집단 소송 허가 사례



사·건·개·요

- 원고인 투자자 A 등은 2008년 4월 B증권사가 판매하던 ELS에 투자함. 동 상품은 1년 후 만기시점에 C주식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이면 22%의 수익을 지급하고, 75%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함
- 1년 뒤 장마감 10분을 남기고 C주식회사의 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결국 C주식회사의 보통주는 75%에 조금 못 미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 봄
- 금감원은 조사 끝에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인 투자자 A 등은 집단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냄
- \* 증권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임



판·단·내·용

- 추가연계증권(ELS)의 판매사와 상품 운용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임
- 대법원은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 달라며 판매사인 B증권사와 운용회사인 D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허가 신청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B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 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음
- 대법원은 동 ELS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판매사와 운용사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로 봐야한다며 자본시장법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 ELS 상품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함



## 기타 분쟁 사례 1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금융기관이 ELS 만기일 장종료 직전에 대량매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시세조종 또는 부당 거래행위로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A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추가연계증권(ELS)은 B은행 보통주와 C회사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기준일인 2009. 8. 26.의 두 기초자산의 총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이 지급되고,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이면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떠안도록 되어 있음
- A증권사는 장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D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하였음
- 기준일인 2009. 8. 26. 무렵에 C회사 보통주 가격은 최초기준가격의 75%를 훨씬 웃돌았으나 B은행 보통주의 주가는 최초기준가격의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음
- D은행은 기준일 전까지 B은행 보통주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가 기준일인 2009. 8. 26. 오후에 접어들자 14회에 걸쳐 합계 106,032주를 매도하였고, 단일가매매시간대에도 2회에 걸쳐 합계 128,000주를 매도하였음
- 결국 위 기준일의 국민은행 보통주의 증가는 최초기준가격의 75%에 40원 못 미치게 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D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판·단·내·용

- 동 추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증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위 기준일 당시 B은행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D은행으로서는 그 증가를 낮추어 수익상환의무를 면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며,
- D은행이 위 기준일에 B은행 보통주를 매도한 행위의 태양을 보더라도, 접속매매시간대 중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특히 단일가매매시간에 이르러서는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기준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고 그 매도관여율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실제로 예상체결가격이 하락하였음
- 따라서 위와 같은 D은행의 B은행 보통주 대량 매도행위는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수익상환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의 기준일 증가를 낮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타 분쟁 사례 13

[서울고법 2012. 6. 8 선고 2010나104272]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폰지사기 업체인 줄 모르고 투자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투자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례



#### 사·건·개·요

- 원고 A생명보험사는 2005년 피고 B자산운용사 펀드에 29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 피고 C자산운용사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재간접 헤지펀드\* 상품에 390억원을 투자함
  - \* 재간접 헤지펀드 : 펀드 하나에 여러 개의 헤지펀드를 편입해서 리스크 분산효과를 도모한 투자 상품임
- 피고 B 및 C 자산운용사는 펀드 자산 일부를 버나드 매도프가 설립한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회사(BMIS)에 투자함
- 2008년 12월 美 연방수사국이 폰지사기로 매도프를 체포하고 징역 150년을 선고함. 조사결과 당시 BMIS 펀드운용자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
  - \* 세계적으로 피해금액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매도프 사건으로 美에서는 수탁회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 원고 A생명보험사는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편입하면서 펀드에 대한 시장위험성 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다면 소송을 제기함



#### 판·단·내·용

- 자산운용사는 헤지펀드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 매도프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며,
- ①자산운용사들이 투자결정단계에서 충분한 위험관리를 거쳤고 운용상황 보고를 게을리 하지 않은 점, ②재간접펀드가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신뢰했다는 점, ④일부 재간접펀드의 경우 투자자 측의 추천으로 투자가 이뤄진 점, ③문제가 된 재간접펀드들이 펀드평가기관에 의해 높은 평가를 얻고 있었고 ⑥과거 투자자도 해당 재간접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낸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간접펀드 자산운용사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평판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헤지펀드 편입 당시에 반드시 수익률을 의심해 실사 및 검토해야 하나 시장에서 평판조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음

※ 폰지사기(Ponzi Scheme)

아무 투자활동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이탈리아계 미국인 찰스 폰지가 미국에서 벌인 사기행각에서 유래함



## 기타 분쟁 사례 14

[대법원 2016. 4. 24 선고 2013다97694]

투자자가 회계법인의 허위·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건·개·요

- 2011년 8월 A사는 비상장사 C사를 우량하다고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15억 규모의 C사 주식을 매입했음
- 이후 C사의 주가폭락으로 A사는 큰 손실을 입었고, A사는 B사가 부실회사를 우량회사로 평가한 부실감사로 투자자를 오인케 했으며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소송 제기



### 판·단·내·용

-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에게 주식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무지, 우발채무, 부외부채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전고지 되었고,
- 주식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인들에게 있으나,
- 비공개기업의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그 주식의 거래나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비공개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그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상당한 규모의 자본잠식상태를 알았다면 이 사건 주식을 약 30억 원에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A사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
-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회계법인에게 손해의 40%를 배상토록 함



## 기타 분쟁 사례 1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108320]

금융기관이 ELS 만기일에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매도한 경우 시세조정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사 A가 B회사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 상품에 가입
  - 증권사 A는 위험 회피를 위해 C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 계약을 맺음
  - C은행이 만기일에 A회사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한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짐
- \*델타헤지 :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며 위험을 회피하는 기법



### 판·단·내·용

- C은행은 기준일 직전 2일간 델타값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하게 거래했고,
- 기준일 당일 델타값에 따라 주식 60만 주를 매도하면서, 주식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 거래량의 10% 범위 내에서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맞추어 매도(이른바 '10% + VWAP' 방식)하였고, 실제 매도가격은 평균 매도가격 이상이었으며, 거래량 역시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 있었음
-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인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고, 매도가격이나 매도물량으로 보아 시세조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타 분쟁 사례 16

[대법원 2016. 1. 7 선고 2013다88447]

자본시장법상 거짓·허위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사·건·개·요

- A해운은 2010년 12월 B, C증권사를 주관회사로 선정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한달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하였음
- 이에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주주들과 그 후 유통시장에서 위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은 B, C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 C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판·단·내·용

- 자본시장법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구를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
-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의 다른 조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의미하므로 같은 장에 속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
-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그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관하여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들은 모두 거짓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미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기타 분쟁 사례 17

[대법원 2015. 11. 9 선고 2015도10308]

투자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자 포털게시판에 투자경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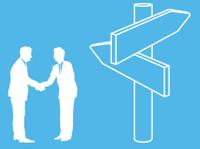
#### 사·건·개·요

- A는 2005년 5월 일반인 B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
- C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이때문에 A등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음
- A는 인터넷 포탈 게시판에 9번에 걸쳐 “B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음
- 이에 A는 B와 C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판·단·내·용

-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함
- A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B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C사와 B의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음



## 기타 분쟁 사례 18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누33515]

### 근무 중 알게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정부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사례



#### 사·건·개·요

-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 수사관인 A는 201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여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김
- 검찰은 A가 직무수행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고
- A는 해당업체의 정보는 직무상 수집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



#### 판·단·내·용

- A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A가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보담당 수사관 근무 중 알게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A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인 것은
-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해임은 정당함

기타 분쟁 사례 1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사·건·개·요

- A는 군청직원으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군청직원에게 건넨
- 금융회사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군청직원에게 A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군청직원의 요구로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 지역명인 XX군이라고 부기함
- 군청직원은 이 계좌의 예금주가 군청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 사본을 A에게 보여주며 5억원의 입금을 요구, 군청직원은 입금액 모두를 인출 후 유흥비로 탕진
- A는 계좌개설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판·단·내·용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A는 돈을 입금할 당시 예금주가 지역군인 XX군이 아니라 A자신이라는 설명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할 계좌에 대해 군청의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나 모습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 금융회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회사에게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됨



## 기타 분쟁 사례 20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둔 종목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투자전문가에게 유죄 선고



### 사·건·개·요

- A는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 TV 방송제작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생방송 증권방송인 '△△△△', '□□□□'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4. 8.부터 2013. 1. 22.까지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선행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 방송에서 단독 또는 다수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분석·추천하여 유망 주식을 매입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는,
- 방송 직후 또는 적어도 방송일부터 수일 이내에 선행매수물량을 매도하거나, 혹은 낮은 목표수익 수준으로 방송 전 또는 방송 중에 미리 예상 상승가격으로 제출해 둔 매도 주문에 따라 방송 중 또는 방송 직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의 매수·매도거래를 하였음



### 판·단·내·용

-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함
- 그 증권 자체에 관한 정보는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도, 이러한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 내의 각종 투자 관련 조연행위가 평가절하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 유인하는 행위는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함



## 기타 분쟁 사례 2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 사·건·개·요

- A회사 대표인 B는 회사가 개발권을 따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
- 2010년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발표전 3천원대였던 A회사의 주가는 이듬해 8월 1만8,500원까지 올랐다가 거래정지 당시 2,155원으로 폭락했고
- 이후 2015년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주당 300~400원대에 정리매매되어 회사의 보도자료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봄



### 판·단·내·용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함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1심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과 감사 과정, 카메룬 정부의 검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 2심과 대법원은 정보제공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분쟁조정사례 · 판례집



# 알아두시면 편한 정보

행·복·금·융·투·자·길·라·잡·이





### III 알아두시면 편한 정보

#### 1 본인 명의의 계좌조회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만이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잊어버린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일일이 각 금융투자회사 지점으로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사실상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미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정확히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비록 본인이 거래한 금융투자회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증권종목명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또는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후에는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피상속인 등에 대한 계좌조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상 증권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인이라 할지라도 전금융권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거래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전에 거래한 금융기관을 미리 메모해두거나 가족들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은 이상, 상속인들이 각 금융기관에 해당 명의인의 사망사실과 본인이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받아야만 망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각 금융권역에서는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 망자의 사망사실과 본인이 망자의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금융권역별 협회로부터 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내역정보를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현재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는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 조회 결과를 통보받는데에는 1~2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음)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제적등본 및 본인 신분증 등)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국내 시중은행(우체국 포함/ 수출입은행, 외국계은행 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3 상장기업 공시정보 확인방법

✚ 주식의 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확인하여야 할 가장 일차적인 정보는 당해 기업의 공시사항입니다.

공시정보란 주식발행기업에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는 HTS 또는 WTS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공시정보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은 별다른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유형의 공시를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4 보유종목의 상장폐지 시 주주의 권리

✚ 투자활동 중 보유 중이던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큰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극단적으로는 투자대금 전액에 대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상장폐지 결정은 당해 기업을 단순히 거래소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의미일 뿐, 기업의 존속여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여전히 당해 기업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주식은 장외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며, 간혹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타 기업과 인수·합병됨에 따라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당해 기업의 존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유로서 결국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보전절차 이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주주에게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주주에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거래소 시장에서의 마지막 환금기회인 정리매매를 통해 최소한의 투자자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환금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할 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III 알아두시면 편한 정보

#### 5 해외 직접투자 방법

❖ 최근 해외 주식시장 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 직접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투자를 하기 원하는 나라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시장에서의 거래는 당해 해외시장에서 거래자격이 부여된 자나 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직접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자격이 있는 해외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 중인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이후 당해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별로 주문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의 경우에는 HTS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반면, 다른 일부 증권회사 등은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거래 증권회사 등을 선정할 때 회사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해외주식, 해외 장내파생상품 등의 직접투자는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이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과 다른 매매제도나 국내 금융기관의 제한된 서비스(환전시간 등) 등에도 유의하여야 하며, 납세신고와 관련하여서도 본인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6 주식 관련 세금

❖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 ■ 과세대상 및 세율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는 경우에 양도가액의 일정률만큼을 세율로 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의 0.5%이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15%(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총 0.3%\*),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는 별도로 양도가액의 0.15%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는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합니다.



■ 신고와 납부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다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도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원천징수와 유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 과세대상

주주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또는 본래의 의미의 배당은 아니나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 이외의 형태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인 의제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 및 과세방법

일반적으로 회사가 거주자인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다음에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하여야 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양도 시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 방법에 의한 양도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본인과 친족, 그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볼 때, 그 보유주식이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주인 자가 양도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본인과 친족, 그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볼 때, 그 보유주식이 발행 주식총수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주인 자가 양도하는 경우

■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10%,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기타의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양도차익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신고와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양도년도의 다음 년도 5. 1.~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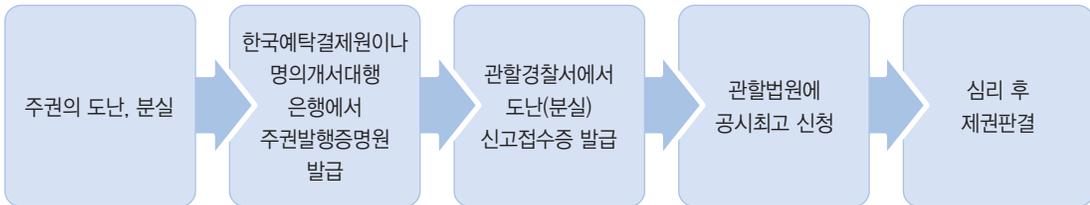
7 국민주란?

✚ 정부의 관리하에 있던 공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특히 80년대말 한국전력과 포항제철(현 POSCO)에 대한 대규모 국민주 배정이 있었는데, 당시 은행을 통해 국민주 청약과 배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당시에 배정받은 주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 이러한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는 주권실물을 출고하여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주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권판결절차를 거쳐야만 주권의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가까운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권의 제권판결 절차



✚ 참고로, 만일 본인명의의 한국전력 또는 포항제철(현 POSCO)등과 같은 국민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들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및 각 영업점에 문의하여 소유주식 현황을 확인하신 후 위와 같이 제권판결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